

월간
재정포럼 4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2년 4월호 제190호

- 현안분석** •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손원익
•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경쟁정책: 경쟁중립성을 중심으로
/ 박한준

- 공공정책포럼** • • 공공기관 정책 성과 및 과제

- 정책흐름** • •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험기반 확충 방안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국가 비전과 기본계획 · 송희준

현안분석

06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 손원익

17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경쟁정책: 경쟁중립성을 중심으로 · 박한준

공공정책포럼

35 공공기관 정책 성과 및 과제

주요국 조세동향

41 홍콩 2012-13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54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험기반 확충 방안

66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70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71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74 공기업 · 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안정적으로 정착

76 잠자는 지방세, 국민에게 돌려준다.

재정통계

78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

이슈 & 포커스

94 [오피니언] 납세정보의 공공성과 개인비밀 보호 외

국가 비전과 기본계획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7차례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민주화·정보혁명 등 달라진 거시환경에 따라 경제기획원 주도의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포기하고, 부처별로 분권적인 기본계획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재 분야별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framework act)은 건강가정기본법 등 57개에 이른다. 기본법 명칭을 쓰지는 않으나 이와 비슷한 진흥법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주기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부처들이 기본계획을 관리하는 방법이 천차만별하다. 계획수립의 배경과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및 계획수립 주기가 다르고 그 내용 또한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부처별 계획 실행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심지어 어떤 부처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나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기본법 및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단기 실적보다 국가정책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관점 유지 필요

첫째, 장기적 관점으로 구상한 범사회적 비전과 분야별 기본계획의 관계이다. 환경이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동태적일수록, 정부가 국가의 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금년 초 기획재정부가 장기 비전 사업을 한다니까, 일각에서 참여정부 말기에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사회 비전 2030’을 현 정부가 폐기했던 사례를 들어, ‘정권 말기에 무용한 일을 한다’며 비판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정착되고 신공공관리 개혁(NPM)이 도입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관점이 실증되고 단기 실적주의(short-termism)가 자리 잡은 문제가 그러한 비판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국가와 사회가 5년, 10년 또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 비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기본계획에 구체화하는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비전과 구상의 개발 과정은 특정 이념 및 이익과 강하게 연계된 정파·학문 분과 또는 경제사회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제 부문의 균형 있는 공유물이어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은 대통령 임기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과거에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많은 기본계획이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수립·집행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제약하고, 책임성 또한 모호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도 관리예산처(OMB)가 주도하는 정부성과결과법(GPRA)에 따른 5년 주기 전략계획이 4년 대통령 임기와 맞지 않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금년에 각 부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추진 중인 기본계획을 점검하여, 내년에 출범할 정부의 정책공약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공약한 분야별 정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5년 임기 동안 소신껏 추진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구현일 것이다. 또한 재정조달이 안 되는 계획은 실행할 수 없으므로, 재정운용계획과 기본계획을 잘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하여야 한다.

관련부처 협업으로 범정부적 실행력과 통합 효과 제고해야

셋째, 부처별 추진체계는 기본계획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추진체계의 빈번한 개편으로 기본계획이 허공에 뜨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구)과학기술부가 관장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구)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정보화추진기본계획이 관련 부처가 폐지됨에 따라 타 부처로 이관되면서 그 추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기본계획은 주무부처가 어디든 관계 없이 그 분야의 다부처적·범부처적 특성을 지니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들이 협업(collaboration)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처 간 경쟁 심화와 협조 부족으로, 기본계획이 부처의 내부 계획으로 전략하여 범정부적 실행력과 통합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 과거에 두었던 경제부총리직을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부처별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을 조정·독려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상위 조정장치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부처의 추진체계도 안정화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기본법과 그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그 존재 이유나 중요성에 있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분야는 기본법체계를 과감하게 일반법체계로 전환, 주무부처의 내부계획 수준으로 바꾸고, 기본법은 범사회적인 핵심정책 분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PF

.....
장기 비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기본계획에 구체화하는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여야 한다.
.....



| 현안분석 |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경쟁정책: 경쟁중립성을 중심으로**
박한준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wson@kipf.re.kr)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부각되는 시점이다.

I.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발 재정위기로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유럽 여러 국가의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각국에서 재정 건전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임금격차의 심화, 비정규직의 증가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꾸준히 늘려 왔다.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부각되는 시점이다.

민간 비영리활동의 재원은 주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조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 기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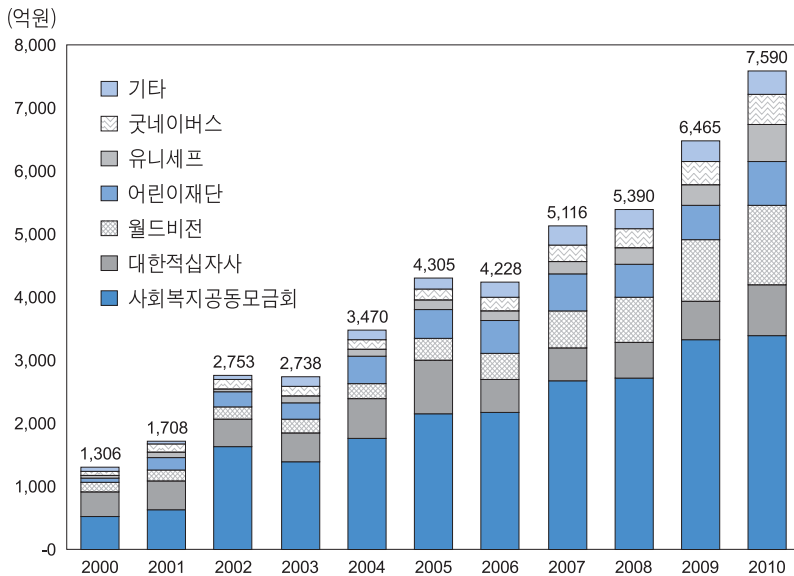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금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것이 기부를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부금 수혜단체의 투명성과 관련된 실태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림 1]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을 나타낸다. 연도별 모금액이 과거 10년 동안 약 5.8배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모금단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고르게 증가하여 다양한 분야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는 크게 개인의 기부와 기업의 기부로 나누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개인의 기부가 기업의 기부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2000~2010)



기부는 크게 개인의 기부와 기업의 기부로 나누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개인의 기부가 기업의 기부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주주의 권익에 대한 침해',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기부' 등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있으며, 준조세 성격을 띠는 경우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은 개인의 기부를 최대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정책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추진되어 왔다.

국세청 소득공제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우리나라 전체 기부금의 구성을 보면 개인의 비중이 약 60%이고 기업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기업의 기부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1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른 모금기관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월등히 큰 법정모금기관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부금 관련세제를 단순화하여 법정·지정·특례 기부금의 세 가지로 나누어 있던 기부금 체제를 법정·지정기부금의 두 가지로 이원화하였으며, 2011년 세법개정 결과 모금기관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모금단체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은 해당 규정을 통해 전문모금단체의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모금기관 간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금(나눔) 관련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비영리분야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정부는 공익단체 관련 제도 개선(법무부), 재능기부 활성화(행안부, 문화부, 복지부), 모금기관 투명성 강화(복지부), 교육기부 활성화(교과부), 세제 지원(기재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쇄신 대책(윈스트라이크 아웃제, 3배의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추진하고, 정보 공개를 통한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반면,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주식 출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였다. 2010년 12월부터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가 아니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게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II.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부 정책

가. 기부금 세제의 단순화

2010년의 세법개정으로 특례기부금이 폐지되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되었다. 종전의 기부금 관련 제도는 기부 수혜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 특례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나치게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금 세제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하여 기부금 세제를 단순화하였다.

2010년의 세법개정으로
특례기부금이 폐지되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되었다.

〈표 1〉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기부금 조세혜택한도 비교

구분	종류	손금한도
개인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의 100% 한도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대상소득의 30% 한도 소득공제(단, 종교단체만 있는 경우 10%)
법인	법정기부금	대상소득의 50% 한도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대상소득의 10% 한도 소득공제

〈표 2〉 한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종 류	손금한도		이월공제	
	법인	개인	법인	개인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 학교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외국교육기관·산학협력단·과학기술원(한국·광주·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교 -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대한적십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 건강보험공단 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전문모금기관 - 기관에 대한 기부금: 공공기관(공기업 제외)·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3년	3년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영역의 가액	해당없음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 인허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의료법인, 주무부장관 추천·기재부장관 지정 법인, 기재부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 특정 용도 지출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연구비·장학금, 공익신탁기부금, 공익목적 기부금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5년	5년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전문병원·노인휴양소 등 제외),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 제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요양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부랑인·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재가장기요양기관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5년	5년

2011년부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단체와 전문모금기관 신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표 2〉의 계속

종 류	손금한도		이월공제	
	법인	개인	법인	개인
- 노동조합 회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 노동조합 회비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	5년
- 공익법인 기부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지정기부금	해당 없음	5년	-

나. 법정기부금단체와 전문모금기관 신설

2011년부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단체와 전문모금기관 신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를 통해 전문모금기관 지정요건¹⁾을 마련함으로써 모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전문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모금기관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전략적인 모금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모금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수의 기관만이 전문모금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 3〉 전문모금기관(법정기부금) 지정 단체

추천기관	단체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문모금기관)
행안안전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전문모금기관)

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제도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로, 본 규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

1)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의2④
 ①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②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③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④ 전용계좌를 개설, 운영할 것
 ⑤ 5년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80% 이상일 것
 ⑥ 기부금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비가 기부금 수입의 10% 미만
 ⑦ 개별 법인별 기부금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액의 25% 이하일 것
 ⑧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없을 것
 ⑨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일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익법인이 스스로 공시등록(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을 하고, 일반인이 그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시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을 확대²⁾하였다. 기존의 제도는 종교법인과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한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11년 7월 세법개정으로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공시대상에 추가하였다.

즉,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시의무를 면제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현황과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을 홈택스(npoinfo.hometax.go.kr)로 통합하였으며, 해당 사이트를 ‘나눔넷(www.nanumnet.or.kr)’이나 ‘더하고나누고(www.nanumkorea.go.kr)’ 등의 나눔포털과 연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의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은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식의 표준화 및 출력·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결산서류 공시의무³⁾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다음의 서류⁴⁾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해야 하며,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①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
-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⁵⁾
-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⁶⁾
- ④ 주식보유 현황 등 주식 관련 서류
- ⑦ 공익법인 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⁷⁾

최근 정부는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홈택스로 통합하였으며, 해당 사이트를 ‘나눔넷’이나 ‘더하고나누고’ 등의 나눔포털과 연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3①, §43의3①

3) 상속세및증여세법 §50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4)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칙 별지 제31호

5)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칙 별지 제31호 부표 1

6)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칙 별지 제31호 부표 3

7)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칙 별지 제31호 부표 2

공익법인은 교육·
 학술장학·사회복지·의료·
 문화·기타 등 6개 분야로
 구분되며, 2010년 결산서류상
 기부금수익이 있는 공익법인은
 1,700개로 나타났다.

- ㉠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 관계
- ㉡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
 현황 등
-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⁸⁾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
 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⁹⁾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이외의 공익법인¹⁰⁾

Ⅲ.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

공익법인공시시스템의 내용 및 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8월을 기
 준으로 공시시스템을 분석하였다. 2011년 8월 동안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상
 5,843개의 법인이 검색되었으며,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외한 4,80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익법인은 교육·학술장학·사회복지·의료·문화·기타
 등 6개 분야로 구분되며, 2010년 결산서류상 기부금수익이 있는 공익법인은
 1,700개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각 유형별 법인 수와 기부금수익이 있는 모금기관 수를 정리한 것
 으로 유형별 기부금수익발생 법인비율을 나타내며, 평균 약 37%의 법인이 기
 부금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유형별 모금기관 수 및 비율

(단위: 개, %)

유형구분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계
유형별 법인수 ㉠	1,184	1,195	1,050	661	209	340	4,804
기부금수익 발생법인수 ㉡	436	316	584	121	78	165	1,700
유형별기부금수익 발생법인비율 (㉠/㉡)*100	36	26	55	18	37	48	-

8) 정형서식 없음

9)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 세무확인등) 3항

10)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공익법인등의 범위)

〈표 5〉는 모금기관 1,700개를 대상으로 분야별 법인 수 및 비율, 기부금총액
 합계, 법인당 평균기부금액을 나타낸다. 전체 모금기관 1,700개의 기부금총액

은 3조 941억 4,200만원으로 한개 법인 평균 99억 3,3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유형별 기부금총액 및 평균기부금액

(단위: 개, %, 백만원)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계
법인 수(비율)	436 (26)	316 (19)	584 (34)	121 (7)	78 (4)	165 (10)	1,700 (100)
기부금총액	1,707,451	381,897	531,694	83,576	125,590	263,934	3,094,142
평균기부금액	3,916	1,208	910	690	1,610	1,599	9,933

전체 4,804개의 공익법인 중 기부금 수익이 발생한 1,700기관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 584개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학술장학의 순서로 법인 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4,804개의 공익법인 중 기부금 수익이 발생한 1,700기관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 584개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학술장학의 순서로 법인 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내용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고 기부금 규모 기준 상위 공익법인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부금공시액 기준 상위 300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소개한다. 조사대상 300개 모금기관 유형별 분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300개 모금기관 유형별 분포

(단위: 개, 백만원)

유형구분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계
유형별 기관수	99	50	75	13	22	41	300
모금액	1,609,984	345,776	462,180	68,619	103,990	244,912	2,835,888

설문은 국세청공익법인시스템에 등록된 법인 중 기부금 수입액 상위 300위까지의 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수행되었다.

300개 기관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10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와 국세청 공시시스템의 결과를 비교하면 6개 모든 분야에서 기부금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술장학·사회복지·문화 관련 공익법인은 공시자료보다 많은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의료의 경우 공시자료보다 적은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공익법인에 대한 표준화된 재무제표가 마련된다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더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V.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의 정상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공익법인이 회계 및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발적인 공시입력으로 인해 공시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회계 및 세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시를 이행하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자가 단체 운영과 세무 업무를 병행하고, 그로 인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류 자료를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등록되는 자료의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사후관리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재무제표의 구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각 공익법인은 공익 유형에 따라 각각 단식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표준화된 재무제표 작성에 한계가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표준화된 재무제표가 마련된다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익법인 관리의 통일성 확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가 각 주무부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공익법인법의 설립과 감독체계가 일원화된다면, 근무인력과 조직을 단일화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리·감독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는 기부 관련 정부기관 및 소관 법령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

에 대한 설립 및 감독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기부 관련 정부기관 및 소관 법령

	주요기능	소관 법령
기획재정부	■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세제 지원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비영리공익법인의 결산자료 공시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업무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지도 및 감독 ■ 나눔문화대축제, 포상 등 나눔 문화 확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각 부처 시/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리 및 감독권 ■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등	■ 민법 및 개별법 등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민간의 자발적 투명성 제고 유도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는 제도를 통해 정부가 각종 의무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익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Guide Star라는 공공자선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단체들의 기부금 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Guide Star는 1994년 설립된 공공자선단체로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영리분야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기부참여를 장려하며, 단체들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대한 단체의 호응도가 높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스스로의 노력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서비스 및 유료서비스를 통해 기부를 원하는 단체의 상세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Guide Star는 현재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Form 990을 제공받아 180만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시스템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세법 501(c)(3)에 따른 비영리단체가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면세신고서는 정보자유법(Free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원하는 개인, 단체에게 사본을 제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비영리공익재단인 한국가이드스타의 경우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의 회계정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관련 정부기관의 추가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KIPF**

<참고문헌>

- 손원익 · 이순태 · 박세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손원익 · 김상현, 『공익단체의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관한 경제적 분석』, 법무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
- 박태규 · 손원익 · 김진,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재정학회, 2011.
- 오영호 · 손원익 · 황준성 · 전광현 · 양재모 · 윤강재,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1.

국가법령정보검색, 웹주소: <<http://www.law.go.kr>>

공익법인 전자공시시스템, 웹주소: <<http://npoinfo.hometa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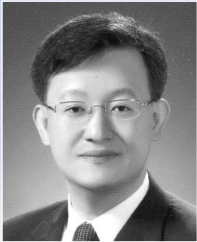
삼일아이닷컴, 웹주소: <<http://www.samili.com>>

국세청, 웹주소: <<http://www.nts.go.kr>>

나눔넷, 웹주소: <<http://www.nanumnet.or.kr>>

더하고나누고, 웹주소: <<http://www.nanumkorea.go.kr>>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경쟁정책: 경쟁중립성을 중심으로



박한준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hanpark@kipf.re.kr)

I. 경쟁중립성의 의미

각국의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산업분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국가들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에 대한 논의가 기업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쟁중립성은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 세제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OECD 공기업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Practices)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가 상대방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규제나 특혜로 발생하는 구조·제도적 경쟁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중립성을 주요 아젠다로 다루고 있다.

경쟁중립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던 산업분야가 개방되면서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함께 공존하며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지역에서도 규제완화가 확대되면서 과거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주요 네트워크 산업분야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또한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의 탄생과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경계가 지녔던 전통적인 의미가 희석되었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경쟁중립성은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 세제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011년도 OECD의 보고서에서는, 경쟁중립성을 “소유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특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 간 경쟁은 더욱 활발해져 경쟁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공기업이 주도하였던 산업분야에 민간기업 및 해외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역량이 아닌 기관의 소유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외생적인 특혜로 경쟁우위를 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2011년도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중립성을 “소유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특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¹⁾하고 있는 것도 공기업에 정부의 형평성을 벗어난 정책적·제도적인 특혜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²⁾.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공공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수익성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공공서비스책무(Public Service Obligation)라고 하여 공기업들이 수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손실을 충당해줄 때, 지원과 특혜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경쟁중립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본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사업에 따른 손실을 초과하여 그 이상을 지원하면, 그 초과 부분이 기관에는 혜택이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공공부문 경쟁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으나, 향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글로벌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쟁중립성 개념을 정리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업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A situation where no commercial entity has a competitive advantage or disadvantage in a mixed market purely as a result of its ownership.” OECD(2011)

2) 최근 2012년도 OECD보고서에는 경쟁중립성을 더욱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음 “Competitive neutrality occurs where no entity operating in an economic market is subject to undue competitiv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OECD(2012)

II. 경쟁중립성의 주요 논의와 쟁점

1. 경쟁중립성 논의의 배경

정부규제 완화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존하여 경쟁하는 혼합시장(mixed market)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과거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였던 기능들이 시장을 통해서도 제공되면서, 민영화 논의와 함께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관리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자국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기업 중심의 신흥경제체제가 규모와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글로벌화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공기업의 수익사업과 사회정책적 비수익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이 중첩되면서, 공기업이 특수한 지위를 기반으로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아파트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와 사업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한다. 이 때 정부가 LH공사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다면, 민간보다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공기업은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힘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공기업이 공익목적으로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투자하는 자원과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처럼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기업과의 경쟁여건에 대한 민간기업의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에만 특수관계에 따른 예외적인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켜 민간기업에 피해를 주고, 공기업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을 주도할 유인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즉, 공기업 특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단순하게는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공익 목적의 비수익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즉,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 정부규제의 차별적 적용과 정부지원의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사업의 성격상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쟁중립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경쟁구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공기업 특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단순하게는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공익 목적의 비수익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경쟁중립성의 쟁점분야와 적용

현재 OECD를 중심으로 정부가 주인이라는 특수한 소유구조로 인해 공기업이 특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경쟁의 장(場)을 조성(leveling the

공기업의 상업적 수익률 추구란 공기업이 자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요금을 책정할 때, 동일한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이 시장을 통해 올리는 수익률 수준에 상응하도록 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playing field) 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적 가이드라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경쟁중립성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세부적 쟁점분야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경쟁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1) 상업적 수익률 추구(Achieving a Commercial Rate of Return), (2) 공공서비스책무 사업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Accounting for Public Service Obligations), (3) 과세의 형평성(Tax Neutrality), (4) 보편적 정부규제 적용(Regulatory Neutrality), (5) 부채조달의 공정성(Debt Neutrality), (6) 정부조달사업체 선발과정의 공정성(Public Procurement Neutrality)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경쟁중립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개별 이슈들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업적 수익률 추구

첫 번째 기준인 상업적 수익률 추구란 공기업이 자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요금을 책정할 때, 동일한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이 시장을 통해 올리는 수익률 수준에 상응하도록 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A Commercial Rate of Return).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책정하고 손실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업적 활동주체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반 생산과정에 투입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하여, 민간과 경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재가 시장논리보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정부가 요구하는 수익률 및 사업성과에 대한 조건과 기준이 민간부문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면,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민간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되어 국가적 부담만 커질 수 있는 악순환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도 다른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을 성과목표로 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책무사업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경쟁중립성의 두 번째 쟁점분야는 사업 활동별로 명확한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비수익사업 및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보상체계는 기관의 성격, 서비스의 성격, 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국 정부나 국가연합체의 제도

및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정부보조금 지급조건과 사업의 범위, 수행주체의 선정절차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채무(accounting for public service obligation) 수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공기업의 사업활동별 명확한 회계처리의 필요성은 정확한 비용산정을 근거로 공익적 성격의 비수익사업 수행과정상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는 동시에, 상업적 수익사업과 공익적 비수익사업 간의 교차보조를 금지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민간에 불공정한 게임이 되기도 하지만,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의지를 반감(disincentive)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확대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교차보조하는 유인(incentive)이 강화될 수 있고, 교차보조가 묵인될 경우 상업적 수익사업까지도 부실해져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채무에 대한 회계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공기업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이에 따른 투명한 회계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기관 내 동일한 인력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의 구분은 기술적으로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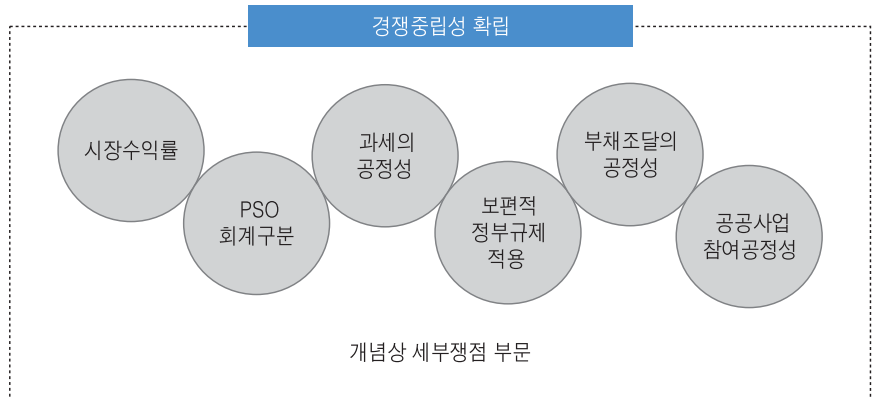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민간에 불공정한 게임이 되기도 하지만,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

정부의 과세시스템 공정성

세 번째 경쟁중립성 논의의 쟁점은 정부 과세시스템 공정성(Tax Neutrality)에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법인화된 공기업에는 민간기업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경쟁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공기업에 예외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비수익적 정책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역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정부규제의 예외대상으로 공기업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도 주요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1] 경쟁중립성의 세부쟁점



보편적 정부규제 적용

네 번째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정부규제의 예외대상으로 공기업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Regulation Neutrality)도 주요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민간부문보다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순응비용이 민간보다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공기업의 경우 정부소유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업무 및 감사절차를 따라야 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 오히려 공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보편적 정부규제의 적용은 소유구조에 따라 경쟁상대에 비해 규제와 감사의 예외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면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채조달의 공정성

다섯 번째 쟁점은 부채조달의 공정성(Debt Neutrality)이다.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공기업이라는 지위로 인해 채무이자율이 낮게 책정되어 금융·이자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객관적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과 이자율이 결정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 공기업이 단지 정부소유이기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없어 금융기관들이 우호적인 조건으로 자금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공기업에는 지배구조에 따른 특혜가 된다. 즉, 공기업의 신용평가와 이자율 책정 시에 정부의 후광효과를 배제하여, 공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신용을 평가받고 재원을 조달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이 정부에 요구되고 있다.

정부조달사업체 선발과정의 공정성

마지막으로 정부조달사업체 선발과정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경쟁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사업의 조달 및 입찰, 계약과정에서의 공기업에 임의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Public Procurement Neutrality)도 경쟁중립성 강화를 위한 OECD 정책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부조달사업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대상자 선정기준과 조달과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경우에도 역시 사전에 그 기준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쟁중립성 논의가 이념적인 수준에서 머물기보다는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OECD의 경쟁중립성 논의 현황

위와 같이 세부 영역별로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경쟁중립성 논의가 이념적인 수준에서 머물기보다는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OECD가 회원국 현황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권고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³⁾. 지난 2011년 개최된 17차 OECD 공기업작업반 회의에서는 앞서 설명한 경쟁중립성을 실현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확인하였고, 신속한 개선이나 개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의 사업활동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를 이루었다.

III. OECD 공기업작업반 현황조사 개요

2011년 OECD 공기업작업반(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Practices)에서는 각국의 경쟁당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쟁중립성과 관련이 있는 법·제도적 체계의 구비 수준, 이슈별 대응 수준을 점검하였다.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해외 주요국 공기업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⁴⁾.

3) OECD (2011), DAF/CA/SOPP(2011) 10

4) 2011년도 OECD 공기업작업반의 경쟁중립성 설문조사 1차 결과를 정리한 것임.

경쟁중립성 확보를 위한 외국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면, 아직은 공식적인 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쟁정책이나 헌법, 관련 법규 및 규제프레임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1. 경쟁중립성의 법·제도적 체계

경쟁중립성 확보를 위한 외국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면, 아직은 공식적인 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쟁정책이나 헌법, 관련 법규 및 규제프레임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호주, 스페인,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경쟁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지침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호주와 같이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경쟁중립성불만처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반면, 기존의 정부부처나 의회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들도 관찰되고 있다.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아일랜드의 경우는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부가 경쟁중립성 정책집행에 관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조달기관 및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표 1〉 경쟁중립성에 대한 법·제도적 체계와 관리

국 가	법적·제도적 체계와 기타 지침 사항	관련 기관
호 주	경쟁 원칙 협약, 연방 경쟁중립정책 성명 (The Competition Principles Agreement 1995 / The Commonwealth Competitive Neutrality Policy Statement 1996), 경쟁법안(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1)	재정규제부, 경쟁중립성불만처리위원회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 관련부처
오스트리아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경쟁법, 조달법, 국가지원 및 시장자유화에 대한 규칙	오스트리아 회계감사원(for SOEs), 공공조달청(Bundesvergabeamt)
브 라 질	브라질 연방 헌법 제173조 제1항	
칠 레	헌법	의회
체코공화국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경쟁보호법, 조달법, 농산물 및 식료품 판매에 대한 시장지배 관리에 관한법	경쟁보호국
덴 마 크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덴마크경쟁법안(The Danish Competition Act)	경쟁위원회, 중대경제범죄검찰청, 기업경제부
이 집 트	국영기업법, 경쟁법, 공기업을 위한 기업관리 규칙	경쟁국, 경제법원
에스토니아	국가자산법, 경쟁법, 공화국정부법	경쟁국, 분야별 규제기관들, 재무부
유 럽 연 합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투명성 지침, 일반경제이익에 관한 사업 프로그램(SGEI Package), 국고보조·독과점 금지·합병 규칙(State Aid, Anti-trust and Merger Rules)	유럽위원회(유럽연합 국가간 혹은 특정경제 간 합병사례), 연합법정
핀 란 드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정책노선, 경쟁법, 지방정부법, 국영기업법, 국가조달 규칙(The Finnish Competition Act, Local Government Act)	핀란드 경쟁국, 핀란드 지역 연합국 (Association of Finnis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시장재판소

〈표 1〉의 계속

국 가	법적·제도적 체계와 기타 지침 사항	관련 기관
독 일	회사법, 예산법, 주식회사법, 경쟁법,	연방 카르텔 청, 기타 규제강화와 관련된 기관들
그 리 스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경쟁법	그리스 경쟁위원회
헝 가 리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경쟁법	경쟁국
아 일 랜 드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경쟁법, 국가자산 및 부채에 대한 검토 보고서	경쟁국, 부문별 규제기관들, 법원
이 스 라 엘	무역관행 제한 법(Restrictive Trade Practices Law)	반독점 당국, 부문별 규제
이 탈 리 아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경쟁법 27조, 민법전, 재정에 대한 통합법	반독점 당국
일 본	독점금지법	공정거래위원회
리투아니아	경쟁법	경쟁위원회
맥 시 코	경제 경쟁에 관한 연방법, 헌법	연방경쟁위원회, 부문별 규제기관들
뉴 질 랜 드	상법	상업위원회
폴 란 드	불공정경쟁방지법, 경쟁 및 소비자보호법, 경쟁정책 (정부문서)	경쟁 및 소비자보호국, 지방정부, 소비자기구들
러 시 아	헌법 제8조, 경쟁보호에 대한 연방법 (독점금지법), 행정장벽감소 및 공공 및 지역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법	러시아 반독점청
슬로바키아공화국	경쟁보호법, 일반법(예산, 주정부), 일반 정부 성명	반독점청, 조달청
슬로베니아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재정관계 투명성 및 분리회계유지법(Transparency of Financial Relations and Maintenance of Separate Accounts for Different Activities Act)	해당부처, 예산감독청
스 페 인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국가의 중앙행정의 기능 및 구조에 관한 법, 국가재산법, 칙령 1373/2009, 경쟁법(The Royal Degree 1379/2009)	경쟁국, 재정경제부
스 웨 덴	스웨덴 경쟁법 (the Swedish Competition Act 2010)	공정경쟁위원회
스 위 스	담합법, 재무예산법	경쟁위원회
터 키	경쟁법	경쟁이사회, 경쟁국
영 국	경쟁중립성과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 경쟁법, 공공계약규제 (The Office of Fair Trade Working Paper on Competitive Neutrality 2010)	공정거래실, 규제기관들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부가 경쟁중립성 정책집행에 관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조달기관 및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 National Practices Concerning Competitive Neutrality, OECD, 2011, p. 12(table 2, Competitive Neutrality frameworks and Oversight)

유럽연합에서는 정부지원이 적정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통제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수행비용을 보상할 경우, 반드시 국가지원과 보조금에 관한 EU 룰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공기업의 상업적 수익률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산정할 때, 상업적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용을 모두 보전하고 민간기업 수준의 수익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배당금 역시 일반 기업 수준으로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뉴질랜드, 영국, 핀란드, 헝가리 등도 정책적으로 공기업이 시장 수준의 수익을 거두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수익률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기업의 수익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있다. 수익률에 대한 정부기준이 없는 칠레와 같은 국가도 공기업과 동일 산업분야에 있는 민간기업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3. 공공서비스책무 수행에 대한 보상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책무는 공기업들이 수행하는 우편·철도·교통부문의 원격지 서비스제공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의 비수익사업활동을 통칭한다. 대부분 국가의 정부들은 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정부지원이 적정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통제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수행비용을 보상할 경우, 반드시 국가지원과 보조금에 관한 EU 룰(EU Rules on State Aid and Subsidies)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 공공서비스책무(PSO) 보상 여부

보상 여부	국 가
보상하지 않음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보상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다만,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은 공공서비스책무에 지출되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따로 보상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수행비용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대부분 사용자(user

charge)를 통해서 보전되고 있다.

4. 세금혜택 및 정부규제

공기업에 대한 과세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독립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따른다. 다만, 법령 공기업은 법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특정 세금을 감면해 주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관련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규제중립성 측면에서도, 법인화된 기업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동일한 규제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공기업에 대한 과세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독립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따른다.

5. 공기업부채의 금융비용

덴마크·아일랜드·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공기업들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때, 일반적으로 지배구조의 특성과 상관없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자율을 책정하는 반면·호주·핀란드·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을 전제하여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뉴질랜드·스위스 등에서는 공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정부소유라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재원조달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이자율 책정이 편파적으로 왜곡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표 3〉 공기업 부채조달의 공정성

구 분	국 가
동일기준에 따른 재원조달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비명시적인 정부보증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터키
명시적인 정부보증	칠레, 이집트, 이스라엘, 멕시코, 러시아
사후조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호주 정부는 경쟁중립성 확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책기반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IV. 해외주요국의 경쟁중립성

경쟁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공정경쟁을 핵심적인 가치로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공정거래 및 경쟁 관련 정책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이슈화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 따라 기존의 경쟁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국가들과 새로운 법률과 조식을 마련하여 대응하려는 국가들도 역시 혼재되어 있다. 경쟁중립성 논의에 대표적인 국가들인 호주와 스웨덴, EU를 중심으로 각국의 경쟁중립성 관련 법·제도적 정책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호주

호주정부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경쟁구조의 개혁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파트너십 지향(Towards a Closer Partnership)’ 과 ‘경쟁력 있는 호주건설(Building a Competitive Australia)’ 이라는 정책성명을 발표하며 건전한 경쟁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왔다. 1992년에는 연방 내 모든 주정부에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경쟁원칙을 정립·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Hilmer 조사위원회(The Hilmer Review)를 설치하였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쟁의 장애요인들을 추적·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 때 제시된 주요방안 중에는 공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여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경쟁하는 산업분야의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도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호주정부는 『경쟁원칙협약』(Competition Principles Agreement), 『연방경쟁중립성정책성명서』(Commonwealth Competitive Neutrality Policy Statement)와 같은 정책지침을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기존의 『상거래법』(Trade Practices Act)을 『경쟁과 소비자를 위한 법률』(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로 개칭하는 등 경쟁중립성 확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책기반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단지 경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만을 개혁 추진동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기업의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활동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정부는 공기업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산정 시,

생산비용을 모두 보전하고 민간기업 수준의 수익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배당금 역시 일반기업 수준으로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⁵⁾. 또한, 호주는 뉴질랜드·영국·핀란드·헝가리 등과 함께 시장 수준의 수익률을 거두는 것을 정책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공기업이 상업적 수익사업의 재원을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할 때, 공기업 자체 신용도가 아닌 호주정부의 신용도가 반영된 우대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the Office of Public Accounts)가 우대혜택으로 절감된 비용만큼을 부채중립성비용(debt neutrality payment) 명목으로 환수하여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호주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법·제도화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주의 경쟁중립성 정책을 전담하는 주요 정부기관으로는 경쟁중립성불만 처리위원회(Australian Government Competitive Neutrality Complaints Office)⁶⁾,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등이 있으며, 연방정부의 재정규제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및 관련부처들이 경쟁중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2. 스웨덴

스웨덴은 공정경쟁위원회 (the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가 경쟁중립성의 주관기구이며, 쟁점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통제는 스웨덴 경쟁법안 (the Swedish Competition Act)을 따르고 있다. 스웨덴 공정경쟁위원회는 경쟁중립성 원칙이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사안에 대한 시정(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스웨덴 의회는 경쟁법안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경쟁중립성 원칙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경쟁법안은 국가기관(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을 포함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영업활동을 할 때, 스탁홀름 법원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영업 및 생산 활동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지만, 국가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의 효율적인 조

스웨덴 의회는 경쟁법안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경쟁중립성 원칙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하지만, 일반기업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간 동안 비용보다 낮게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가격산정을 관리감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재무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수용 수준을 판단하고 있다.

6) 호주정부의 경쟁중립성불만처리부는 쟁점사안이 명확하지 않거나, 충분히 논의할 만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만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50여년 넘게 유럽연합
조약에서 강조하던 중립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시킨
EC Article 106조는 공기업도
경쟁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기능을 의도적 혹은 결과적으로 왜곡시키거나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법원에 의해 국가기관의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스웨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이 독과점금지법 등 기존의 공정경쟁을 규율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쟁법안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특혜와 경쟁왜곡 현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독과점과 달리 공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⁷⁾.

3. 유럽연합(EU)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조항인 EC Article 86조와 106조에 따라 국민경제적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가 경쟁원칙을 해치면서 공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국가들은 EC Treaty의 경쟁조항(EC Article 86-88조) 적용지침 등에 따라 자국의 경쟁관련 법안에 유럽연합 조약의 경쟁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50여년 넘게 유럽연합 조약에서 강조하던 중립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시킨 EC Article 106조는 공기업도 경쟁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회원국들에게 경쟁 중립성 원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V. 한국의 경쟁중립성 정책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경쟁중립성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프레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관련 법률체계와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책시스템으로 공기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와 반(反)경쟁적 요소 등을 통제하고 있다. 1980년대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공익성을 기반으로 공기업부문의 자연독점을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규제개혁과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7) OECD 공기업작업반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비용이하로 책정되고 있다는 의문과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도 강화되었다⁸⁾.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3차례의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자회사에 대한 특혜 여부를 점검하였을 때 공기업들도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하였다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1999년 11개 공기업에 대해 과징금 439억원이 부과되었으며, 2000년 5개 공기업에 대해 과징금 395억원이 부과되었고, 2003년 3차 조사에서는 7개 공기업에 대해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정부사업 및 공공사업의 조달체계상 공정성(public procurement neutrality)이 침해되어 경쟁중립성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외에는 경쟁중립성 확보를 위한 다른 쟁점 영역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지는 않고 있다.

한편,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공기업의 사업구조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독점으로 중개하도록 하였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통해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2년 2월 미디어랩(media representative)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여전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방송광고시장의 민간참여와 경쟁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수의계약을 통해 철도광고 판매를 대행하였던 코레일애드컴도 2009년 제2차 선진화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을 활용토록 한 것인데, 단순하게는 공적으로 관리되었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쟁중립성의 시각에서는 시장경쟁의 공정성과 정부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특혜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유지된다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경쟁하는 산업분야와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경쟁중립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공기업의 사업과 기능이 민간기업과 중첩되고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공기업의 사업과 기능이 민간기업과 중첩되고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사총괄과, 『OECD보고서: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2009. 9)

9) 공정거래법 23조는 기업집단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경쟁중립성 확보의
요체는 OECD가 제시한
경쟁중립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거론되었던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Ⅵ. 정리

요컨대, 경쟁중립성 문제는 공기업이 상업적 수익사업과 공익적 비수익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비수익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정부 지원의 효과가 공익적 비수익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의 기반이 될 때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가 탄생하면서 국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국경에 상관없이 유럽시장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각국 공기업의 사업영역이 이웃국가들로 확장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의 공기업 상호간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민영화와 경쟁중립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경쟁중립성 확보의 요체는 OECD가 제시한 경쟁중립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거론되었던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즉,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적절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정책사업의 구분을 체계화하는 작업에서부터, 공기업이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기관내부의 인력과 설비를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투입비용을 어떻게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도 계속하여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다.

결국 경쟁중립성 제고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책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동일조건에서 경쟁하도록, 과세중립성, 규제중립성, 부채중립성 등 경쟁중립성의 주요 원칙들을 도입하는 것이며, 공기업의 사업영역이 민간기업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민영화를 고려하는 것도 대안일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입법활동을 통해 경쟁중립성에 대한 정부의지를 강조하고 정부가 공정한 관리자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에게 일관성이 있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KIPF**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2002.
공정거래위원회, 『OECD 보고서: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2009.

- OECD 공기업작업반, “A Compendium of OECD Recommendations, Guidance and Best Practices bearing on Competitive Neutrality,” DAF/CA/SOPP(2011)10, 2011.
- OECD 공기업작업반, “Balancing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Priorities of State-Owned Enterprises,” DAF/CA/SOPP(2011)4, 2011.
- OECD 공기업작업반, “Finland-Competitive Neutrality Questionnaire Response,” DAF/CA/SOPP(2011)20, 2011.
- OECD 공기업작업반, “National Practices Concerning Competitive Neutrality,” DAF/CA/SOPP(2011)9, 2011.
- OECD 공기업작업반, “Sweden’s Competition Rules-Competitive Neutrality Questionnaire Response,” DAF/CA/SOPP(2011)18, 2011.
- OECD 공기업작업반, “Towards a Best Practice Report on Competitive Neutrality,” DAF/CA/SOPP(2011)8, 2011.
- Rennie, M & Linsay, F, “Competitive Neutrality and State-Owned Enterprises in Australia: Review of Practices and Their Relevance for Other Countries,”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 No. 4, 2011.



공공정책포럼

■ 제25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 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책 성과 및 과제

제25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공공기관 정책 성과 및 과제
- 일 시 2012년 3월 29일(목) 07:30~09:30
- 장 소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미팅룸(3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2년 3월 29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미팅룸(3F)에서 「공공기관 정책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25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금년도 공공정책포럼이 시작되었음. 한국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음. 정부와 공공부문이 50여 년 동안 잘 이끌어 온 점이 가장 큰 팩트 중의 하나이며, 여러 나라에서 개발 경험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봄. 어떻게 공공기관을 잘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 이와 같은 포럼을 진행하는 것임.

주제발표 요약

공공기관 정책 성과 및 과제

김동연/기획재정부 제2차관

오늘 공공기관 정책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한 다음, 마지막에 공공기관 종사자와 학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겠음.

그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겠음. 상반기 경제상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경제선순환 고리에서 단절돼 있는 부분, 또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해서 거시경제 베이스하에서 미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서 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음.

특히 4가지 부분, 즉 국내소비, 수출부분, 기업투자 활성화, 정부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일단, 수출은 한미FTA를 계기로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정부지출은 양적으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질적으로 재정의 내용 중에서 일자리와 서민의 희망예산 쪽에 역점을 두면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정집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신경쓰고 있음. 다만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활성화는 지금 필요한 부분의 정책적 임팩트를 고민하고 있음.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일단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음. 어떤 것들은 사전적 위기관리로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 일들이 있지만, 사전에 대비를 못해 그로 인한 부정적인 임팩트가 올 경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함. 두 번째 방향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의제 설정임.

최근 복지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복지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복지 논쟁 중에서, 재정지출이나 경제성장 고려 없이 제기되는 복지문제 측면에서 보면 위기관리이고, 복지 국가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명제라면 어떤 복지국가 형태로 가야 할지는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임. 부채관리, 사회적 요구에 의한 공공기관의 역할, 언론의 비판, 일반 국민들의 시각 측면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어젠다 선점부분에서 보면 20~30년 이상 평가 등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개선할 점, 근본적으로 고쳐할 점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그동안 공공기관 운영 방향은 개발연대 이후 변천을 겪어 왔음. 1960년에서 1980년 초까지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 목적하에 진행되었음.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시행되었고,

자율성을 확대해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체제를 도입했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은 민영화와 통폐합 등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에 힘을 썼음. 8개의 공기업과 50개 자회사를 민영화했고, 16개 기관을 통폐합했음. 2003년부터는 전략적으로 시스템부분을 혁신했음. 변화관리와 소프트웨어적 혁신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구함.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방향을 보면 효율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대와 국민생활 안정화를 기조로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모토로 민간수행이나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통폐합과 기능·정원 조정 등을 통한 효율화를 꾀했음.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국가가 운영하고, 고용승계나 자연퇴직 등을 활용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공공기관 관리체제의 변천은 1983년 이전에는 24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사전통제 위주로 주무부처가 관리를 했고, 1984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했음. 2004년도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산하기관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88개의 정부산하기관이 관리대상에 포함되었음. 2007년에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서 대폭적인 공공기관 운영체계 정비가 있었고 지금의 체제가 이때 확립이 되었음.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하였고 사업 감독은 주무부처가, 경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공운위를 통해서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짐.

경영평가제도의 변천은 1983년 12월에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했고 2003년 12월에 산하기관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었고, 2007년 4월에 공운법 시행 이후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최근 변화는 2008년에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

가를 도입하고 2011년에 지표 수를 축소하고 기관장 평가체계를 기관평가와 통합해 간소화하는 노력을 했음. 일부 기업은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했음.

지난 4년 동안 운영 정책의 성과를 보면 우선은 하드웨어적 개혁으로 강력한 경영효율화를 통해 탄탄한 기초체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음. 정원 2만 2천명을 감축하고, 기관통폐합은 일부 폐지를 포함해서 41개를 16개로 줄였으며, 민영화는 9개를 달성하고 15개는 추진 중에 있음. 출자회사도 86개를 정리하였고, 기능조정 및 경쟁도입도 22개 중 13개를 했음.

소프트웨어적 개혁 측면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우선적으로, 2009년 3월에 노사관계 항목 공시를 했고 평가제도를 도입했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체협약을 개정한 160개 기관 중 144개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했고 타임오프제의 경우 작년 3월 기준 노조가 있는 기관 193개 중 118개 기관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했음. 보수체계는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100개 기관에서 도입을 했고 이 중 15개 기관은 전 직원에 대해 도입을 했음.

성과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확산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보수체계에 있어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직무급 보수체계를 확대했고 고졸자 채용 확대와 연계했음.

또한 부채관리 측면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작년에는 10개 중 3개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음.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해 2010년에는 인천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기업은행, 가스공사 등으로 확대했고 작년에 한국공항공사와 산업은행이 추가되었음. 올해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됨.

평가를 보면 엇갈릴 수 있겠지만 군살 제거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작년 11월에 공공센터에서 작업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민간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음. 미흡한 부분으로는 일부 과제의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이나 가스산업의 경쟁 도입, 일부 골프장 매각 등이 있음.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임. KMAC 조사에 따르면 '정책효과가 있다'는 21.5%, '보통'이 42%, '효과가 없다'가 36.5%로 실질적인 국민체감 수준은 미흡함을 볼 수 있음. 다른 맥락에서 '정책의 추진속도가 빠르다'는 21%, '적당하다' 44%, '느리다' 35% 정도로 국민의 시각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쪽과는 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듦.

또한 선진화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착근에 주력을 해야 할 것임. 계속해서 선진화 점검과 관리를 하고, 동시에 평가와 성과의 확산을 추진해야 함.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용역이나 학술대회를 통해, 평가와 성과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은 물론 미흡한 점도 함께 평가해 주셨으면 함.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등에서 우리의 운영평가와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 부분에 적극 지원을 할 생각임. 공공기관 운영·관리·평가시스템이 공유되었으면 함. 학문적으로도, 기관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머징 마켓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국제컨설팅 마켓에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임.

앞으로 추진정책은 크게 3가지 과제를 볼 수 있음. 첫째는 일자리 창출과 열린 고용, 둘째는 서민생활 안정, 셋째는 중소·협력업체 지원임. 이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임.

우선 신규채용 규모를 1만 5천명 확대하고 이 중 16%를 고졸자로 채용할 계획이며, 특히 복지·노동·SOC·금융 분야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이를 통해 대학진학률이나 중장기적 인력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됨. 중소기업 업무관련성이 높은 15개 시범기관을 중심으로 17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임. 중소기업은 정책지원과 공공기관-중소기업의 협조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와 구조 및 체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있길 바라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은 과거 3년간 지역인재 채용률이 30% 미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채용확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근로 개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중임. 이들 정책목표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강하게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서민생활 안정 부분은 우선 공공요금 안정, 즉 경영 효율화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함. 농산물 수급이나 주거비·교육비 안정으로 농수산유통공사, LH, 장학재단 등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사항임. 정보제공 확대 및 경쟁 촉진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충하고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임. 유통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석유제품 거품 빼기 등이 있음.

투자의 조기집행으로 국내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27개의 중점관리 대상기관의 투자를 1/4분기 27%, 상반기 57%를 집행할 계획임. 중소협력업체 지원 문제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글로벌 브랜드 및 네트워크 활용과 공동마케팅 활성화 등을 하고 있음. 또한 성과공유제 확대 및 창업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향후 논의 예상과제로 첫째, 단기적 시계에서 중장기적 시계로 정책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즉,

업무량과 인력수요를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평가제도도 기관장 임기와 연계해 평가 기간을 재설정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칙이나 국가부채와 유사한 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 총량관리 등 중장기적인 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두 번째는 획일성에서 특성에 맞는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즉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자율성 확대 간 균형을 맞춰서 기본적인 방만경영 통제를 위한 국회나 감사원의 요구를 따르는 한편, 특성을 고려해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민영화나 스핀오프, 아웃소싱 등을 추진할 때에도 획일적인 민영화보다는 산업적 특성 및 국내외 시장구조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정책방향의 등대 역할을 해 주길 바람.

세 번째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부채관리방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접근보다는 개별적·심층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고, 공공요금의 결정 방식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관리에서도 같은 맥락임.

마지막 부분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공공기관 운영과 정책방향에 좋은 의견이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언제나 경청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음.

■ 자유 토론

송대희/좌장

30년 넘게 공공기관이 걸어온 길을 리뷰하고, 특히 2012년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불가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협력관계 등 구체적인 언급과 중장기 논의 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말해주셨음. 이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과 질의를 바람.

이상호/한국남부발전 사장

포럼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듦.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력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전기요금 문제를 말씀드릴까 함. 작년 한전이 3조 5천억원이라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로 전기요금을 10%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이 연료비 원가 상승에도 못 미쳐 전기요금을 올려도 효과가 없었음.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 전력회사로서는 딜레마임. 전력요금 산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 주시길 바람.

조원동/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공공요금과 관련해 조세감면제도와와의 연관성 속에서 공기업의 준재정활동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임. 가격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저가로 공급하는 문제 등은 정부의 역할을 공기업이 대행하는 것임. 이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이 부담하는 정도를 알림으로써 요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

권흥삼 / 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공공기관 참여자나 종사자들은 대부분 어젠다로 경영평가제도를 제기했었지만 지난 30년간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컸음. 미래 공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앞으로 제기될텐데, 임원들 구성 즉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건의를 드릴까 함. 기관장은 현행평가와 임기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와 임원추천위원회 시스템 방식이 과연 맞는지, 비상임이사는 보수와 선발의 문제, 상임이사는 임기제(2+1)의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동연 / 발표자

공공요금 문제는 정책목표와 결려 있고 정치적 이슈와도 연관이 있음. 조세지출이나 공기업의 준재정 역할에 대한 공개나 반영 문제는 맞는 부분임. 한전이나 담당 공공기관의 수익에 앞서 에너지 소비나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물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결책 제시보다는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함. 비상임이사 대우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임원들의 구성 문제는 귀담아 듣고 유념해 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음.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리지만 건의의견은 잘 접수하겠음. KIP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2-03

요약

- 홍콩 정부는 2012년 2월 1일에 이윤세와 소득세의 환급을 포함하는 2012-2013 예산안을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 2월 17일에 국내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함
- 오스트리아 의회는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surcharge) 부과, 연구개발 프리미엄의 한도 인상, 그룹과세제도 및 부동산 자본이득세제의 개정, 금융거래세 도입, 스위스와의 조세협정 체결이 주요 세계개편 계획으로 포함된 2012 긴축재정(안)을 2012년 2월 10일에 승인함

1. 홍콩 2012-13 예산안 발표

- 홍콩 정부는 2012년 2월 1일에 이윤세와 소득세의 환급을 포함하는 2012-2013 예산안을 발표함
 - 홍콩은 2011년에 667억홍콩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음

- 예산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과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2-2013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법인세 등에 대한 환급 예정

- 홍콩 정부는 2011-12 과세연도에 결정된 이윤세(profits tax), 근로소득세(salaries tax), 개인별 과세액(personal assessment) 중 75%를 12,000홍콩달러를 한도로 환급할 예정임
 - 재산세는 환급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소득을 개인별로 결정하는 과세액에 포함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됨
 - 이윤세에 대한 환급대상에 법인도 포함되므로 이윤세를 납부하는 법인도 혜택을 받게 됨
 - 이 경우 법인별로 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단일(single)로 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한도가 적용되고, 합산(couple)으로 한 경우에는 결합단위별로 한도가 적용됨
 - 이윤세와 근로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세목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별로 과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결정된 과세액에 근거하여 환급됨
 -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환급 시기는 2012년 7월 말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소득세에 적용하는 공제액의 증가

- 소득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액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인상됨

<표 1> 소득세 공제액 비교표

(단위: 홍콩달러)

공제 항목		현재 (2011-12)	예산안 (2012-13)
기본공제		108,000	120,000
기혼자공제		216,000	240,000
홀부모공제		108,000	120,000
자녀공제	1~9세	60,000	63,000
	출생연도 추가자녀공제	60,000	63,000
부양 형제/자매공제		30,000	33,000
부양 형제/자매공제	60세 이상, 장애인	36,000	38,000
	55~59세	18,000	19,000
추가 부양 부모/ 조부모공제 ¹⁾	60세 이상, 장애인	36,000	38,000
	55~59세	18,000	19,000
장애인공제		60,000	66,000

주: 1) 추가 부양 부모/조부모공제는 납세자와 동거한 경우에 해당함
 자료: 홍콩국세청, <http://www.ird.gov.hk/eng/tax/budget.htm>

다. 기타

- 부모 등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elderly residential care expenses)공제의 한도를 현재 72,000홍콩달러에서 76,000홍콩달러로 인상함
 - 거주 간호시설 비용공제는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조부모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하는 소득공제임
-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 주택대출이자의 공제한도는 100,000홍콩달러임

- 강제성 공적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의 의무적립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인상함
 - 홍콩은 강제성 공적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의 의무적립액에 대하여 연금공제를 하고 있는데,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현재 공제한도인 12,000홍콩달러는 2012-13에 14,500홍콩달러로, 2013-14에 15,000홍콩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2-13에 사업등록비용(business registration fees)을 면제함

2. 싱가포르 2012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 2월 1일에 국내 생산성향상과 중소기업 및 저소득근로자, 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함
 - 2012 예산안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싱가포르인의 노동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세를 개정하고자 함
 - 2012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직접세 분야

1) 법인세

- 싱가포르 정부는 중소기업에 1회성 현금지원을 할 예정임
 - 현금지원액은 2012년 과세소득의 5%이고, 5,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함
 - 지원대상은 2012년 회계기간 동안 1명 이상의 피고

용인에 대해 국민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회사부담분을 납부한 법인임

- 개보수(renovation or refurbishment) 비용에 대한 공제한도를 증액할 예정임
 - 사업장의 개보수작업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 2월 16일에서 2013년 2월 15일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함¹⁾
 - 한도는 3년을 기준으로 150,000싱가포르달러임
 - 2012 예산안에는 사업장 개보수비용에 대한 공제한도를 150,000싱가포르달러에서 300,0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함
 - 한도는 3년을 기준으로 함

- 1년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가액을 5,0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하여 즉시상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함

- 2배 공제(200% deduction)를 적용할 수 있는 국제화 지출(internationalization expenditure)에 대상이 되는 적격비용을 추가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추가되는 적격비용은 해외사업 개척을 위한 여행비용, 해외투자 연구를 위한 여행비용, 해외 무역박람회(trade fair)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 국내 무역박람회(trade fair)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함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투자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은 과세하지 않음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6월 1일부터 적용됨

- 적격투자의 투자이익이란, 처분 이전에 최소 24개월 이상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투자 이익임

2) 소득세

- 소득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Earned Income Relief, EIR)와 장애자공제(Handicapped EIR)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상됨

<표 2> 기본공제와 장애자공제

(단위: 홍콩달러)

연령	기본공제(SGD)		장애자공제(SGD)	
	현재 ¹⁾	예산안	현재 ¹⁾	예산안
55세 미만	1,000	1,000	2,000	4,000
55세 이상~60세 미만	3,000	6,000	5,000	10,000
60세 이상	4,000	8,000	6,000	12,000

주: 1)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싱가포르』, 2011 내용을 정리한 것임

3) 조세 혜택

- 특별고용지원금(Special Employment Credit, SEC)을 강화함
 - SEC는 고용주가 월급여 3,000홍콩달러 이하인 50세 이상의 싱가포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 임금의 8%를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근로자의 월급여가 3,000싱가포르달러에서 4,000싱가포르달러인 경우에 지급금은 감소되기 시작하여 4,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은 없음²⁾

1)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싱가포르』, 2011

2) <http://www.sec.gov.sg/sec2012.html>



- 생산성 및 혁신지원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를 강화함
 - 생산성 향상 지원제도에서 현금지급(Cash payout) 비율을 30%에서 60%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현금 지급 혜택을 연장함
 - 연단위의 현금지급 공제신청을 분기별로 가능하도록 함
- 합병 등 조직재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7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완료된 적격 합병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하여 200% 공제를 허용함
 - 적격합병 등에 대한 거래비용 200% 공제는 연간 100,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함
- 집합투자공제(Integrated Investment Allowance, IIA)제도를 도입하여, 승인된 프로젝트를 위하여 해외의 생산시설에서 고정자본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2월 17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분부터 적용함
- 선박부문 혜택(Maritime Sector Incentive, MSI)을 받고 있는 적격 선박 운영자와 선박 리스회사에 대해 특정소득에 대한 자동적인 과세면제를 허용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1년 6월 1일부터 소급되어 시행됨
 - 특정소득은 선박의 처분이익과 새로운 건설계약과 건설중인 선박에 대한 처분이익임

나. 간접세 분야

1) GST

- 투자등급의 금과 귀금속의 수입 및 공급은 면세가 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GST 여행객 환급 시스템을 국제적인 크루즈 승객들에게 확대할 예정임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국내 여행객이 해외에 체재한 시간이 48시간 이내이고, 600싱가포르달러 미만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150싱가포르달러에 해당하는 GST수입면제가 적용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2) 부과금

- 담배생산에 대한 부과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

3) 기타

- 운반기구에 대한 이전비용을 11싱가포르달러로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이전비용의 부과는 폐지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됨

- 녹색운반구보조금(Green Vehicle Rebate, GVR)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승용차와 택시에 대한 GVR시스템을 탄소배출에 근거한 운반구 체제(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 CEVS)로 바꿈

다. 기타조치

- 노령사회보장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에 대한 50세 이상의 자영업자의 본인부담률을 9%에서 9.5%로 인상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근로자에 대한 CPF의 회사 부담비율을 <표 3>과 같이 인상할 예정임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표 3> CPF의 부담률

(단위: %)

연령	고용주	근로자
50세 이상~55세 미만	14	18.5
55세 이상~60세 미만	10.5	13
60세 이상	7	7.5

3. 오스트리아 2012 건축재정(안) 의회 승인

- 오스트리아 의회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제출한 5개년도 건축재정(안)을 2012년 2월 10일에 승인함
- 2012 건축재정은 재정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유로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함임
- 오스트리아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의 4.4%였으며, 2011년에는 3.4%로 감소하였음
- 2012 건축재정에는 약 70억유로의 세수를 창출하기 위한 세제개편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2012 건축재정에 포함된 주요 세제개편에는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surcharge) 부과, 연구개발프리미엄(R&D premium)의 한도 인상, 그룹과세제도(group taxation) 및 부동산 자본이득세제의 개정,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및 스위스와의 조세협정(tax agreement) 체결이 있음

가.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Surcharge) 부과

- 휴가비, 크리스마스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 급여에 부가세(surcharge)가 부과될 예정임

- 현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6%의 단일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와 같은 급여에 대해 누진적 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될 예정임

<표 4>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surcharge) 세율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 620.00	0.00
620.01~25,000.00	6.00
25,000.01~50,000.00	27.00
50,000.01~83,333.00	35.75
83,333.01~	일반소득세율(약 50)

자료: Ernst&Young, International Tax Review, No. 03/2012, 12 March 2012

나. 연구개발 프리미엄(R&D Premium)의 한도 인상

-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 프리미엄의 한도가 연간 100,000유로에서 1,000,000유로로 인상됨
- 오스트리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연구개발활동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프리미엄(R&D premium)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현재 연구개발 프리미엄은 연구개발비용의 10% (2011년 이전 8%)로 산정되며, 연구개발비용은 연간 100,000유로를 한도로 함
- 2012 건축재정의 승인으로 연구개발비용의 한도가 100,000유로에서 1,000,000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 연구개발비용의 한도가 인상되는 대신 연구개발프리미엄의 신청자격 요건은 강화될 계획임

다. 그룹과세제도(Group Taxation) 공제 가능 손실액의 한도 설정

- 오스트리아의 현 그룹과세제도(group taxation)에



따르면 그룹 내 해외기업(foreign group members)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그룹 전체이익에서 공제 가능함

- 다만, 공제 가능한 손실액은 그룹 내 해외기업의 손실발생액을 내국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금액이며, 경우에 따라 이 금액은 (외국세법에 따라 산정된) 실제 손실발생액보다 높을 수 있음
- 공제 가능한 손실액이 실제 손실발생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2 건축재정은 그룹과세제도의 공제 가능 손실액에 한도(conversion cap)를 설정함
- 손실액의 한도를 실제 손실발생액으로 설정함으로써, 납세자는 ① 내국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손실액과, ② (외국세법에 따라 산정된) 실제 손실발생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

라. 부동산 자본이득세의 보유기간 요건 폐지

- 2012 건축재정 승인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과세될 예정임
- 현 자본이득세제에 따르면 취득 후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시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건축재정 승인으로 2002년 3월 3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보유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5%의 단일세율로 자본이득세가 과세될 예정임

마.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2014년까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할 계획임
- 금융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오스트리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오스트리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두 거래 당사자 모두 납세의무를 지며, 오스트리아 은행이 금융거래세를 원천징수할 계획임
- 과세소득 및 세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조세협정(Tax Agreement) 체결

-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보유하는 스위스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협정(tax agreement)을 스위스와 체결할 예정임
- 오스트리아가 스위스와 체결할 조세협정에 따라 스위스 금융기관은 과거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보유해 온 스위스 미신고계좌에 대해 조세협정을 소급적용하여 산정된 세금을 오스트리아 과세당국에 일괄납부(lump-sum tax payment)해야 함
- 독일과 스위스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협정을 지난 2011년 11월에 체결한 바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조세협정을 스위스와 체결할 계획임

EU 보고서 요약

Monitoring Tax Revenues and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들의 조세구조 변화와 세계개혁 내용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 ■ 금융위기로 인해 직접세 세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의 주요 세수가 직접세에서 사회보장부담금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응적 움직임을 보이는 직접세 세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경기순환주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사회보장부담금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함 • 간접세는 일부 국가에서 감행한 자유재량적 감세조치의 영향으로 감소함 ■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들은 주로 직접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하는 세계개혁을 단행함 ■ 일부 조세정책은 금융위기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조세정책으로는 ① 자본조달비용, ② 부동산시장, ③ 금융기관 임원보수와 관련된 조세정책을 들 수 있음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EU 회원국의 조세구조, 세계개혁 및 조세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보고서(taxation papers) “Monitoring Tax

Revenues and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를 2011년에 발행함

- 특히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들의 조세구조 변화와 세계개혁 내용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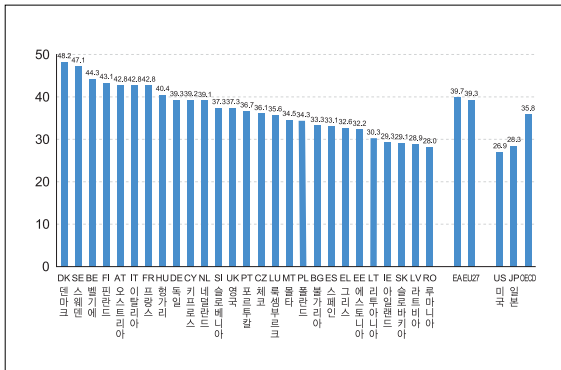
1. EU의 조세구조

-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의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여전히 높은 편임
 - [그림 1]에서와 같이 2008년 EU의 국민부담률은 39.3%로서, 미국, 일본 및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EU의 높은 조세부담률은 재정지출 재원조달을 위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된 세율인상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EU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은 국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각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격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상 5개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매우 높은 수준(40% 이상)인 반면, 동유럽을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변방(peripheral)에 위치한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비교적 낮은 편임
 - 그러나 1995년 이후 각국의 국민부담률 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EU, 미국, 일본 및 OECD의 국민부담률(200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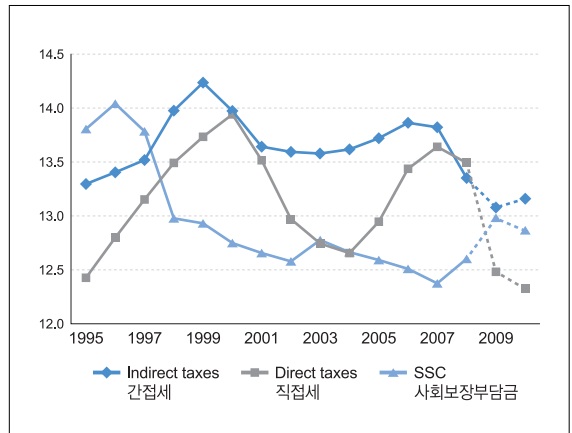


주: 일본과 OECD의 국민부담률은 2007년 수치이며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잠정 수치임

자료: Commission services for the EU countries, OECD, 2009(미국 및 일본)

[그림 2] EU 27개국의 간접세·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비율(1995~2010)

(단위: GDP 대비 %)



자료: Commission services

- 금융위기로 인해 직접세 세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의 주요 세수가 직접세에서 사회보장부담금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임
 - EU 회원국의 세수는 크게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생산세, 수출세, 물품세 등), 직접세(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및 사회보장부담금으로 구성됨
 - 경기순응적(pro-cyclical) 움직임을 보이는 직접세는 경기순환주기에 민감한 반면, 사회보장부담금은 경기순환주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함
 - 이에 따라 [그림 2]에서와 같이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 직접세 세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부담금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함
 - 간접세는 일부 국가에서 감행한 자유재량적 감세조치(discretionary tax cuts)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감소함

- 장기적으로는 EU 회원국들의 직접세·간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세수구성비가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2.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의 세제개혁(tax reforms)

-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들은 다양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음
 - 특히 2008~2009년에는 재정부문 지원 및 수요 촉진을 위한 자유재량 예산조치(discretionary budgetary measures)가 단행됨

〈표 1〉 최근 EU 회원국들이 단행한 세목별 세제개혁

구분	세율	과세소득 범위 (특별 세제조치 포함)
법인세	증가	리투아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감소	체코, 그리스(2010~2014),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웨덴, 리투아니아
개인 소득세	증가	그리스, 아일랜드, 프랑스,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감소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감소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부가가치세	증가	체코, 그리스, 스페인,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감소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2008.12~2009)
물품세	증가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감소	이탈리아, 리투아니아(2009~2011), 폴란드, 슬로바키아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a

- EU 회원국들이 단행한 세제개혁은 크게 ① 세율 개정과 ② 과세소득 범위 조정으로 구분됨

- 직접세의 경우 대체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인하는 내용의 세제조치가 이루어짐
 - 이는 노동과 자본의 공급 및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임
 - 특히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공제 인상 조치를 단행한 국가가 많았음
- 재정적자 회복을 위한 재원은 부가세 및 물품세의 세율 인상 및 세원 확대를 통해 조달됨
 - 다수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율 및 물품세율이 인상됨
 - 재산세 또한 부동산세에 대한 면세점 인하, 누진세율 도입 등을 통해 세수가 증대됨
 - 이 밖에도 환경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였음
- 반면, 간접세의 무분별한 인상은 거래 흐름 및 자본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 간접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가 직접세보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음
 - 그러나 간접세의 무분별한 인상은 국가 간 재화 가격의 불균형을 유발하여 거래 흐름 및 자본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3. 금융위기 관련 조세정책

- 조세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 요인은 아니었으나, 일부 조세정책은 금융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금융위기와 관련된 조세정책을 살펴보고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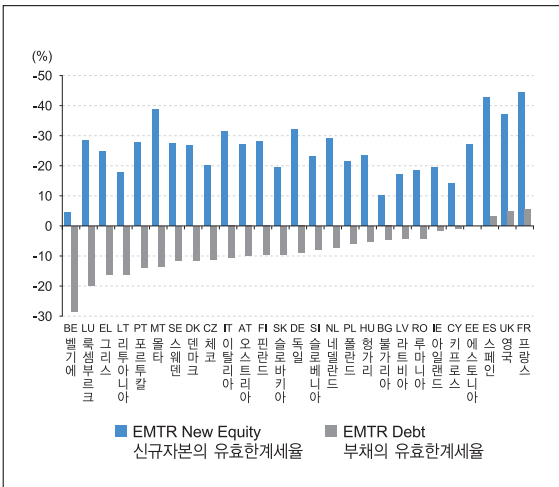


조세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가. 자본조달비용과 조세정책

- 현 법인세제하에서는 부채조달이 자본조달보다 유리함
 - 부채조달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과세소득에서 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자본조달은 이와 같은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그림 3]과 같이 모든 EU 회원국에서 부채의 유효한 계세율이 신규자본의 유효한계세율보다 낮게 집계됨
- 따라서 기업은 자본조달보다 부채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유발함
 - 금융위기를 통해 기업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신용경색 발생시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림 3] EU 27개국의 부채 대 자본의 유효한계세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e

-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자본공제제도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포괄사업 소득과세제도(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 또는 두 제도의 절충안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ACE는 자기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자기자본에 대해 부채와 동일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CBIT는 법인이나 비법인(개인사업, 파트너십 등) 형태의 사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써, 부채와 지분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법인 등이 지급한 차입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음
 - 두 제도의 효과성의 우위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음
 - ACE와 CBIT의 절충안은 일부 자본이익의 소득공제를 허용함과 동시에 일부 이자비용의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두 제도의 세수효과를 상쇄시킴으로써 재정구조 측면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음

나. 부동산시장과 조세정책

- 미국과 같이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까지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되어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기의 주된 원인은 낮은 이자비용, 거래비용 및 무분별한 신용확대에 있으나, 조세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일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많은 국가의 부동산세제가 주택소유자에 대해 이자비용의 소득공제 허용, 낮은 재산세 부과와 같은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표 2>에서와 같이 EU 회원국의 총조세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임
-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세혜택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김과 동시에 주택 공급 및 수요 측면에 외부적 충격이 발생시 그 경제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함

<표 2> EU 회원국의 부동산세 비율(2008)

(단위: %)

회원국	GDP 대비 비율	총조세 대비 비율
오스트리아	0.43	1.01
벨기에	1.16	2.63
불가리아	0.20	0.61
키프로스	0.48	1.22
체코	0.40	1.11
독일	0.65	1.68
덴마크	0.97	2.03
에스토니아	0.30	0.93
그리스	0.84	2.58
스페인	0.79	2.41
핀란드	0.49	1.14
프랑스	1.86	4.34
헝가리	0.23	0.57
아일랜드	1.32	4.54
이탈리아	0.84	1.97
리투아니아	0.26	0.89
라트비아	0.63	2.19
몰타	1.16	3.39
폴란드	1.09	3.17
포르투갈	1.13	3.09
루마니아	0.76	2.76
스웨덴	0.75	1.61
슬로베니아	0.53	1.43
슬로바키아	0.36	1.27
영국	3.53	9.48

주: 일부 국가의 수치는 부동산 거래에 직접 부과되지 않은 거래세나 기타 미미한 금액의 조세가 누락됨에 따라 과소평가되어 있음
 자료: "Taxes in Europe" Database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세제조치로는 ① 주택 소유자에 대한 귀속임대료(imputed rents) 과세와 ② 주택보조금 폐지 및 이자비용 공제 제한이 있음
- 귀속임대료란 주택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스스로 임대료를 지급(또는 수령)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임대료임

- 이 밖에도 주택소유권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안, 부동산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 또는 용역(예: 보험 등)에 과세하는 방안 등 부동산으로부터 세수를 창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다. 금융기관 임원보수와 조세정책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 체계 문제는 금융위기 발생원인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함
-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오직 단기성과를 기준으로 임원 등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OECD는 조세정책이 임원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급과 같은 전통적 보상체계와 비교하여 보너스,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연동보상체계(performance-related pay)에 조세혜택이 더 부여되는지 여부를 연구한 바 있음
- 연구 결과 대부분 국가의 조세정책은 성과연동보상체계와 전통적 보상체계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¹⁾

1) OECD, The Taxation of Employee Stock Options, Tax Policy Studies No. 11, 2005



- 오직 일부 국가에서만 성과연동보상체계에 대해 스톡옵션 과세이연과 같은 제한적인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금융기관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주식기준보상(equity-based pay-outs)에 대한 세율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정책흐름



-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험기반 확충 방안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안정적으로 정착
- 잠자는 지방세, 국민에게 돌려준다.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험기반 확충 방안

* 본 자료는 2012년 4월 16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서 발표한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험기반 확충 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 16(월) 10:00,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험기반 확충방안」을 상정·논의함
- 박재완 장관은 중국의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경제구조의 불균형(imbalance)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 도시·농촌 간 개발격차 해소,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등 도시화*등을 통해 전반적 소득 증가와 재분배를 추진하고,
 - * 중국 도시화율 전망 : (‘11) 51% → (‘20) 63%
 - *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 내수시장의 최대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음을 강조(4. 2일, 보아오 포럼)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견인형으로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 간의 균형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
- 박재완 장관은 이런 중국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을 강조
 - 첫째,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내수시장이 커지는 한편, 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 둘째, 도시화의 확산과 함께 환경 문제 등이 중요

해지고, 새로운 산업 수요가 발생

- 박재완 장관은 국내 기업이 중국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
 - 첫째, 각종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상호 시장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FTA 추진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내고,
 - 중국 현지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과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
 - * 지원체계 정비, 협력채널 활성화, 수출금융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등
 - 둘째, FTA 등 포괄적 제도적 틀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분야별 민·관 차원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이를 위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큰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 중국 거대 내수시장의 소비재 진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통·운송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시책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 환경 서비스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커지

고 있는 금융, 법률 시장 진출을 확대

- 정부는 서비스 분야 주관 부처별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과 관계 기관의 수요 등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즉각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
- 양국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협상” 등에 반영할 예정

참고 주요 중점 추진 과제

분야	중점 추진 과제
제도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추진, 투자보장 내용 개선 ■ 수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지적권 보호 워크숍 개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무역관」(KBC) 중심, 서비스 산업 진출 종합지원 체계 구축 ■ 在中國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 활동 강화 ■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경영 컨설팅 제공 ■ 「서비스무역 교역회」에 한국관 구성, 한·중 서비스무역 포럼 신설 ■ 「한·광동성 경제 무역발전 포럼」(‘12.11월) 개최 ■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 금융,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 확대 ■ 수출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활용, 기술력 보유 기업 지원 확대 ■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지원 확대 ■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대상 확대 등 마케팅 지원 확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화 국제컨설팅 등 원격교육 분야 교류 증진 기반 조성 ■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 한·중 교사 교류 사업 확대 ■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등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중국 내 분교 설립 등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사항 검토 ■ 對中 교육통상 전략(‘12. 하반기) 마련 ■ 한·중 대학총장 포럼, 한·중·일 교육연구기관 간 공동회의 활성화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 현지 공동제작 투자유치 설명회, 「필름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국 CCTV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 공동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 ■ 게임분야 한·중 공동사업 발굴 ■ 한·중 저작권 포럼 등을 통해 문화 콘텐츠 보호 환경 개선 ■ 한·중 수교 20주년 계기, 관광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 활동 추진

분야	중점 추진 과제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시장 특화상품 개발 등 현지 맞춤형 환자유치 활동 강화 ■ 무료시술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 ■ 한국 의료이용 보험 상품 개발 추진 ■ 현지 의료인 대상 학술 교류회·홍보회 확대 ■ 미디어 노출을 통한 한국 의료 브랜드 홍보 강화 ■ 검진센터, 성형, 척추·관절 등 전문 병원 설립을 본격화 ■ 의료기기 등 하드웨어와 의료기술·서비스 패키지 수출 상품 개발 ■ 新 의료협력 분야 발굴 등 의료 분야 진출 전략(‘12. 하반기) 수립
유통·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상품 특별전 등 KOTRA와 중국 현지 소평몰과의 협력 강화 ■ 중국 내 온라인 유통 바이어 초청, 국내 소비재 업체와 의 상담회 개최 ■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12. 5, 6월) 개최 ■ 공동물류센터나 콜센터, 환불·수리 서비스 등 A/S 기능 확대 ■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활성화 ■ “중국 물류 전문가 인턴십 프로그램” 등 신설 ■ 항공노선 증설, 공급력 증대 등 검토, 한·중 해운회담 내실화 ■ 휴게소와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 등 버스 운송사업 진출 확대
IT·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 협의회」 신설(‘12. 5월, 중국) ■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 선하증권 도입 ■ 양국간 「I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 “시험 인증기관 중국 진출 육성 프로그램” 추진 ■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CO-WORK 강화 ■ 「에너지 절약 교류회」, 「ESCO 로드쇼」(‘12. 하반기) 개최 ■ “한-광동성 ESCO 시범사업” 추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유망 협력 시범 프로젝트 발굴 등 체계적 진출 전략 마련 ■ 중국 환경시장 진출 가이드북 제작, 국내 환경기업 홍보 강화 ■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환경기술 국제 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강화 ■ 중국 현지 유망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참여 확대 ■ 한·중 도시생활 폐기물 분야 협력 MOU 체결 ■ 녹색 환경기술 시범 전파사업 등 “공동 매칭 펀드사업” 활성화 ■ “글로벌 그린 파트너십 포럼”(‘12. 6월) 내실화 ■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금융·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금융협회 중심, 국내 초청연수, 포럼, 인적교류 활성화 ■ 한·중 금융당국 간 MOU 활용도 제고, 금융당국 간 협력채널 구축 ■ 중국 현지 국내 로펌 홍보 설명회(‘12. 5월) 신규 추진 ■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 신설 ■ 중국 내 「한국법 센터」 개설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 방안

I. 추진 배경

① 중국 내수시장은 2020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

* 세계소비비중(크레디트스위스): ('09)中7.6%, 美28.4% → ('20)中21.4%, 美20.7%

- 대외의존형 경제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의지*와 지방 도시 성장, 중산층 증가 등이 주요 요인

* 내수확대 10대 조치('08. 11월), 10대 산업진흥계획('09. 1월), 12차 5개년계획('11~) 등

- 질적으로도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 新세대 등장(20대 세대: 2.2억명, 30대 세대: 1.8억명)에 따른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

② 기간 우리나라는 중국을 가공 및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교역 기반을 확대하였으나, 내수시장 진출은 다소 미흡

- 현재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의 기술력 향상 등에 따라 가공무역 비중도 점차 감소될 우려

* 점유율(전체/내수): 일본(12.8/11.7), 미국(7.4/8.3), 독일(5.4/7.5), 한국(10.0/5.9)

-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의 전환, 경제 고도화 등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 제조업을 통한 가공무역 위주의 對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

③ 이를 위해, 향후 도시화 진전과 소득증가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비하여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역점

- ① 한·중 FTA 추진, 투자보장 협정 개정 등을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 ② 양국간 서비스 분야 교류 기반을 지속 확충하여 향후의 개방 폭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II. 중국 서비스 시장 및 양국간 교류 현황

1 시장 현황

① (현황) 중국은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43%*(2010년)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OECD 32개국 평균: 70.6%, 한국: 58.2%, 개발도상국: 50% 수준

- 주요 31개 성시(省市) 중 베이징(74.9%), 상하이(57.0%), 광둥(44.6%)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중국 전체 서비스업/GDP 비중(43%)을 훨씬 하회
- 취업자 비중도 35.5%(선진국 69% 수준)에 불과해 향후 서비스 시장 규모가 지속 커질 전망

② (정책기초) 중국 정부는 내수 위주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중

-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서비스업의 GDP 비중 “4%포인트 성장*”을 목표(2010년 43% → 2015년 47%)로 설정

* 11차 5개년 계획 목표치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중국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

- 서비스업의 장려 업종 수를 112개*로 늘리고 세부 업종별 서비스업 진흥정책 실시 예정('11.5월,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

* 11·5규획 수립 시점인 2005년의 지도 목록에 제시된 업종 수는 33개에 불과

- '12.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도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양로·가사·의료 등 서비스업 발전을 제시

* 투자·수출 주도형의 양적 성장모델을 ①소득분배구조 조정, ②중산층 비중 확대, ③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소비 주도형 질적 성장모델로 전환

2 양국간 교류 현황

① **(교역·투자)** '10년 서비스교역 규모(244억달러)가 '98년 대비 10여배 증가하고, 서비스교역 수지가 '07년 이후 지속 흑자 시현*

* '07년 흑자(1억 7,640만달러) 전환 이후, '10년에는 31억달러 흑자 기록

** '10년 서비스 교역 규모는 상품교역의 13%, 서비스 무역흑자는 상품무역 흑자의 6.8% 규모

• 對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로 점차 전환 중

* 서비스업 투자 비중(%) : ('03년) 11.8 → ('11년) 20.7

** '11년말 누계 기준, 對중국 서비스 분야 투자 법인 수는 5,112개로 우리나라 전체 對중국 투자의 23.4%를 차지

② **(진출업종 현황)** 최근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기대 등으로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지속 증가('10년, 현지 법인 수 : 1,301개)

• 소매유통업 등 도소매업*(29.8%)과 금융·보험업(24.1%)의 진출규모가 큰 편

* 도소매업, 요식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롯데백화점(마트), CJ 홈쇼핑, 파리바게트, BBQ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성공사례가 창출

對 중국 서비스 투자, 각 업종 비중

('11년말 누계 기준, %)

업종	비중	업종	비중
도소매	29.8	운수	5.3
금융·보험	24.1	예술·스포츠·여가	3.8
부동산·임대	11.8	출판·영상·방송	3.7
과학·기술	10.8	교육	0.5
숙박·음식	7.6	보건·사회복지	0.2

• 최근 교육, 의료, 법률, 금융, 보험, IT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증가되는 추세

* 중국 현지의 외국기업 진출 진입규제와 영업제한 등에도 불

구, 연해지역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성공사례가 창출

III. 서비스 분야 교류 확대 방안

기본 방향

① 기반 구축

① 경제협력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FTA 추진, 투자 보장, 지적권 보호 강화, 기술규제 완화 등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소

②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 구축

* 서비스 진출기업 지원체계 정비, 중국 중앙/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 활성화, 서비스 분야 수출금융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등

② 분야별 대책 추진

①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큰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

② 중국 거대 내수시장의 소비재 진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통·운송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화

③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시책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환경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

④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금융, 법률 시장 진출을 확대

1 기반 구축

1. 제도적 틀 마련

① (FTA 추진) 한·중 FTA를 국내 서비스 기업의 對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획기적인 기회로 활용

- 상호간 서비스 부문의 호혜적 이익 추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서비스 진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접근

* 서비스 부문 교역 장벽 축소로 인한 후생 증가는 非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 비해 5배 이상의 효과 추정(Robinson, 1999)

- 규제의 투명성 확보 등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서비스 기업의 애로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

② (투자 보장) 한·중·일 투자보장 협정* 체결(12. 3 월) 이후에도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협정수준: 한·일 투자협정 > 한·중·일 투자협정 > 한·중 투자협정

- 설립전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 '투자 자유화'와 對중국 투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투자자 보호' 조항 개선

* '합동위원회' 등에서 현지 진출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해소 노력 지속 전개

③ (지식재산권) 수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 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식 재산권 보호 체제를 구축

- 양국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양자간 협력 MOU 체결과 지재권 보호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획득과 보호기반을 마련

* 양국 공통 출원 건에 대해 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 타 국가에서도 출원인 신청에 따라 심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제도

2. 시장 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① (지원체계 정비) 국내 서비스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의 지원 기능을 강화

① 베이징, 상하이 등 서비스업 진출 유망지역 해외 무역관(KBC)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 진출을 종합 지원*

* 시장조사, 현지 마케팅, 금융 지원, 법인 설립,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서비스 기업 중국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

- 在중국 지원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통해 업무 협의, 정보 교환 활성화 등 현지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

*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연구원, KOTRA, 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 보건산업진흥원, 저작권 위원회 등

②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북경, 상해 등 중국 내 5 곳 운영)를 통해 중국 진출 서비스 기업의 법률·경영 컨설팅* 제공

* 현지 신규 법인설립 법률/회계/세무절차 전반 지원 추진, 서비스 분야 진출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 세미나 개최(북경, 상해, 광저우 등)

② (양자간 협력강화) 중국 중앙·지방정부와의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시장개척 기반을 조성

① 「북경 서비스무역 교역회」*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한·중 서비스무역 포럼」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

* 중국 정부는 中 최대 상품교역회인 「광저우 상품박람회」와 함께 「북경 서비스무역 교역회」를 최대 서비스교역 플랫폼으로 육성 추진 중

② 「한·광동성 경제무역발전 포럼」*을 통해 녹색 지식서비스 등의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他 지역으로의 확대 모색

* 韓 지경부-中 광동성 간 장관급 협력채널로 '에너지절약과 물산업 등 환경 서비스 협력'을 주제로 포럼 개최(12. 11월)

③(수출금융 지원 확대) 중국 현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 분야를 다변화하고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

* 서비스 상품 수출 대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未 활성화

① 병원, IT, 공연사업 등 新성장분야 발굴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기업 대상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병행

* 서비스 수출 여신 확대(억원) : ('10) 3,454 → ('11) 4,074 → ('13) 6,000

② 서비스 수출에 대한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해외 사업 금융보험** 지원 등을 강화

* 서비스 종합보험(억원) : ('11) 512 → ('12) 1,000 → ('13) 1,200

** 해외사업금융보험(조원) : ('11) 2.2 → ('12) 3.0 → ('13) 3.3

서비스 분야 수출금융 지원

◇ 수은의 수출 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을 활용, 게임 등 문화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물품의 제작자금을 지원

◇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09. 9월)' 지원을 지속 확대** 운영

*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및 금융기관 대출로 연계 지원하고, 판매시 수익금으로 상환

** 완성보증(기보, 억원) : ('10) 166 → ('11) 281 → ('12e) 350

④(마케팅 지원 확대) 중국 현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지원과 중국 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

① 중국 현지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대상을 확대*

* 수출 500만~5,000만달러인 중소기업 → 수출 100만~5,000만달러인 중소기업

② 중국 서비스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연간 3천만원 내외의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쿠폰 형태로 제공

* 해외진출전략 수립, 해외바이어 및 협력업체 발굴, 법률·회계 컨설팅 등

2 분야별 추진 대책

1. 교육 통상

①(원격교육 소비) 학생 3억 2천만명 이상의 교육대국*인 중국과 원격 교육**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중등교육 취학률 42%, 고등교육 취학률 24%로 향후 높은 성장률 기대

** 중국 내 인터넷 베이스 기반 고등교육 이수자 수('09년) : 417만명 수준

• 중국과의 교육정보화 정책경험 공유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 「교육정보화 국제 컨설팅」 등을 추진

* 고위정책담당자 등 대상 e-러닝 연수, 교원 초청 연수, 관련 인프라 지원 등

②(인적자원 개발) 우수 인재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유학생 유치, 교육 전문가의 상호 교류 등을 위한 여건 조성

① 양국 대학 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내 한 국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중국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

* 중국 현지대학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및 공동 학위 과정 개설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 (사례) 한양대는 대학홍보와 유학생 유치 활동을 위해 상해, 청도, 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에 현지사무소 설치·운영중

-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등을 통해 국내-중국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조성

*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한·중 대학 간 복수학위 운영 사례 : 동서대(韓)-중남재경정법대(中) 합작으로 중국 내 '한·중 국제교육학원' 설치
→ 중국 3년+한국 1년 수학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11~'15) 개요

■ (주요 내용) 한중일 3국 대학간 컨소시엄 단위의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

- 교류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각 국별 연간 100명)
- 프로그램 개발 : 공동·복수학위 등 특화된 공동 커리큘럼 개발·운영

■ (지원내용) 각국 정부는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의 일부 지원

- 학생교류비 : 체재비(초청국)/항공료(파견국), 수업료 : 컨소시엄 대학 간 상호 면제
- 프로그램 개발비(교과과정 개발, 어학교육비 등) : 각국이 자율적으로 대학에 지원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의 시행으로 한국 대학의 유학생 지원 및 교육서비스 질 관리 노력 강화

* 인증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절차, 학사관리, 생활지원 등을 평가하여 교육서비스 질 제고

③ 중국 내 한국어 보급 확산과 한국 내 중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한·중 교사교류 사업*」 등을 확대 시행

* 교류인원('12년) : 한국인 교사 30명,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③ (교육기관 진출) 국내 학교법인의 중국 내 분교 설립* 등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사항 등 검토

* 현재 중국 내 교육기관과의 합작인 경우에만 현지 교육시장 진입이 가능하나, 중국 정부는 일부 유명대학의 경우 자국 내 분교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

• 국외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 등을 지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외국대학 수용 법제도 연구,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컨설팅,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④ (교육통상 전략) 對中 교육통상 전략을 마련(12. 하반기)하고, 대학 간,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여건을 조성

- ① 중국 교육시장 분석과 상호 교육통상 증대방안 등을 강구하고, 향후 FTA 협상 추진 등에 반영
- ② 교육통상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한·중 대학총장포럼*」, 「한·중·일 교육연구기관 간 공동회의**」 개최 등을 활성화

* 제1회('07, 한국 고려대, 43개대) → 제2회('10, 중국 길림대, 41개대) → 제3회('11, 한국 영남대, 51개대) → 제4회('12, 중국, 55개대 이상)

** 한국 교육개발원 - 중국 교육과학연구소 -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간 MOU 체결('11. 11월)

2. 문화·관광 산업

①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연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문화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콘텐츠 공동제작*을 활성화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공동제작물은 상호 자국산 콘텐츠로 인정되어 외국 제작물에 대한 규제 미적용

①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영화제」('12. 10월)를 계기로 '영화* 공동제작 협정체결**」 등을 추진

* 중국은 극장용 수입영화 수의 상한을 연간 50개로 제한하는 수입쿼터제 운영

* 중국은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는 등 선진기술 획득의 중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

- ② 「현지 공동제작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현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필름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국 CCTV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KO-PRODUCTION in Beijing 개최('12. 4월, 9월) 예정

** KBS-CCTV '중국을 움직이는 힘' 제작 중(3부작, '12. 8월), 한국 관련 소재 다큐멘터리(2~3부작) 제작 협의 중

- ② (협력 네트워크)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정책 교류채널을 활성화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

- ① 「한·중 게임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게임 분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중 공동사업**을 발굴

* '09년 이후, 연 1회 양국 순차 개최(양국 문화부 및 게임 관계자로 구성)

* 게임분야 인력교류와 경진대회, 공동제작 등 게임분야 공동사업 추진

- ② 「한·중 저작권포럼」('12. 7월)과 정부간 회의를 정례 개최하여 문화 콘텐츠 보호 환경 등을 지속 개선

- ③ (관광 산업) 관광 교류* 확대 및 위기상황 공동 대응 체계 확립 등을 위한 정책 협의와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

* '11년 방한 중국인은 약 220만명으로 18.3% 증가, 다만 지리적 인접성에 비해 한국방문 유치가 미흡

- ①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각종 문화·경제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 추진

* 방한 관광 특집 프로그램, 한·중 우수경제인 시상, 한·중 우수상품전, 중국 2·3선 도시 관광 박람회 참가 등

- ② 관광장관회의,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한·중 연해 지역관광 포럼 등 기존 민·관 협력 채널을 활성화

3. 보건·의료 서비스

- ① (환자유치 확대) 의료기관 진료자 수 58.4억명('10년)에 이르는 거대 의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시장 특화 상품, 보험상품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

* (유치실적) '09년 4,725명(전체 3위, 11%) → '10년 12,789명(전체 2위, 19.4%)

* (1인당 진료수익) '09년 128만원(평균 94만원) → '10년 132만원(평균 131만원)

- ①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 등으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 등을 감안, 현지 맞춤형 환자유치 활동 강화

- (대도시*) 한류스타, 화장품, 관광 등과 연계한 미용·성형과 노인·여성·만성 질환자 대상 건강검진 등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국시장 특화 상품 개발

* 중국 부유층 50% 이상이 10대 도시(북경, 상해, 광주, 심천, 항주, 청두, 남경, 복주, 창사, 제남)에 거주

- (중서부)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무료시술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의료지원 프로그램: 청도 인민병원에 국제클리닉 개소('09. 3월, 인하대)

- ② 보험상품 개발,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유치 채널을 구축하고, 중증환자 유치 확대를 추진

- 글로벌보험사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에이전시와 한국 의료이용 보험상품 개발 추진*

* MSH-China('10. 11), CIGNA-International('12. 1) 등 글로벌 보험사와 한국 의료기관 간 계약 체결로 보험 적용 중증환자 등 유치 강화

- ③ 현지 의료인 대상 학술교류회·홍보회*를 확대하고, 미디어 노출을 통해 한국 의료 브랜드 홍보를 강화

* 중국 현지 유명 뷰티숍 경영자(250명) 초청 팸투어('12. 4월), Intl Travel Insurance Conference 참가('12. 6월, 상해),

- 한·중 학술교류회 개최(12. 9월) 등
- 온라인·SNS·현시 방송 송출 등*을 통해 한국 의료 홍보 강화와 인지도를 개선
- * 아리랑TV 뉴스 송출(중국 광동TV), 영상 광고, 5부작 다큐멘터리 송출(12년 下), 이벤트 프로모션 실시, 상설 홍보관 운영(12. 10월, 북경) 등

②(의료기관 현지 진출) 최근 중국의 민영 의료시장 개방*과 독자투자 허용 추세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검진센터, 성형, 척추·관절 등 전문병원 설립 등을 본격화**

* 현재 유럽, 싱가포르,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외자 영리법인 형태로 진출

중국 내 지역별 한국 의료기관 진출현황(12. 2월 현재)

지역	상해	북경	연길	대련	기타	합계
병원 수	8	6	5	2	7	28

- ①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전략 성시의 의료 시장 및 제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기관 진출 전략(12. 하반기)을 수립
- 한국의료인, 의료기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양국 당국자 간 협의를 활성화
- * 의료기관 설립 신청 간소화, 한국의료인 면허 절차 간소화 및 기간 연장(현재 1년), 의약품·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 ② 병원건축·의료기기 등 하드웨어와 의료기술·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수출상품 등을 개발
- ③(보건의료) 성장 가능성과 비교 우위를 감안, 새로운 의료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차원의 협력을 강화
- * U-health, e-learning을 통한 의료서비스 교육, IT기반 smart 병원관리 등
- 중국보건부·보건성 관계자 초청 등을 통해 한국

의료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의료인·의료기관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협의

4. 유통·운송 서비스

①(유통) 1선 도시 외에 2·3선 도시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거점 확보에 주력

- ①(온라인) 중국 온라인 쇼핑몰(B2C), TV홈쇼핑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홈쇼핑 한류' 붐 조성
- 「한국관」 개설, 「한국상품특별전」 확대 개최 등 KOTRA와 중국 현지 우수 쇼핑몰*과의 협력을 강화

* Jiayougo(홈쇼핑), Haitao(복합채널) 등 채널별 선두권 업체 등

-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유통망 활용 전략수립·채널개발*·마케팅 등 지원

* "온라인+홈쇼핑", "TV방송+온라인", "온라인+오프라인" 등 신형 유통망 공략

- 중국 내 온라인 유력바이어 초청, 韓 생활 소비재 업체와의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를 도모

* '12년 2회에 걸쳐 중국 대형 유통망 초청 상담회 개최 : 4월(50개사), 10월(100개사) 초청

②(오프라인) 중국 진출 대형 유통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강화

* 이마트(27개), 롯데마트(87개), 메가마트(3개), 롯데백화점(2개) 등 119개

-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Test Marketing)을 개최*하고, 반응이 좋은 제품은 중국 내 쇼 점포 입점을 추진

* 롯데마트 : 북경점(12. 3월, 3개 점포) 및 상하이점(12. 5월, 3개 점포)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92개사, 200여개 제품)

* 롯데백화점 : 천진점(12.6월), 한국 프리미엄 상품전(30개사, 50여개 제품)

②(물류) 공동 물류센터 거점 기능을 확충*하고, 중국 물류 전문가를 양성

* 중국 내 SOC 부족에 따른 국내 기업의 조달·배송 등 물류문제 해결

- ① 마케팅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물류센터* 내에 콜센터, 환불·수리 서비스 등 A/S 기능을 확대
* 현재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한 거점 도시 8곳에 물류센터 운영중
- ② 공동물류센터와 지역 유통채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을 활성화
* 우수 중소기업 내륙시장 판로개척 판촉전, TV홈쇼핑 한국소비자 판촉전 등
- ③ 중국어와 전문 물류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해 「중국 물류 전문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신설

③(운송) 양국간 도로·항공·해운 등 관련 분야의 정 부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시장진출을 위한 개선방안 지속 강구

- ① (항공) 한·중 간 인적·물적 교류확대 등에 맞춰 항공 노선* 증설, 공공력 증대 등을 검토
* (여객) 양국 14개 항공사, 주 704회 운항, (화물) 양국 7개 항공사, 주 71회 운항
- ② (해운) '93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중국 진출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개선
* 9개 카웨리선사(한중합작) 및 한진해운 등 6개 해운선사가 22개 지역에 법인을 설립('11년 기준)
- ③ (도로) 버스 운송사업 등에 있어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게소와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 등을 추진
* 금호산업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출하여 고속버스와 자동차 대여사업을 수행중이며, 지역별 11개 회사와 합작법인을 체결하여 142개 노선 운영

5. IT·지식서비스

①(전자상거래 등 IT)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신설(12. 5월, 중국)하고, 전자무역 등의 협력 사업을 발굴

- ①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 선하증권* 도입, 한·중 대학 간 졸업증명서 온라인 유통 시범사업 등을 추진
*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명(선사가 수출자에게 교부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우편송달 → 수입자는 선하증권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지불)
- ② 「IT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양국 SW기업 간 네트워크 등을 구축
* 'SW 수출멘토링'을 통한 현지화·마케팅 지원, 'SW 해외 진출 협의체' 활성화 등 추진

②(시험인증)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거점 확보를 위해 진출 시장조사, 금융지원, 법인설립,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

-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R&D 사업 등 활용
- ① 기 진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운영 노하우 등 "중국 시장 진출 가이드" 발간 등을 통해 신규 진출기관을 지원
- ② 「전자정보제품 오염 방지법」 등과 같은 新강제규제에 대해 국내의 시험 인증기관 간 CO-WORK*를 통해 대응
* 중국 내 지식서비스 시장에 대해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다국적 시험 인증기관 간 공동연계 등을 통해 신규 참여 추진

③(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교류회, ESCO 로드쇼(12. 하반기)를 통해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한-광동성 ESCO 시범사업」을 추진

6. 환경 서비스

① **(진출 전략)** 중국 산업구조 조정 등에서 환경 산업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을 강화

* "중국 국가 환경보호 제2차 5개년 계획"에서 대규모 환경 인프라(약 605조원 규모) 구축 추진

① 집중협력지역 선정, 지역별 유망 시범프로젝트 발굴, 금융지원 확대 등 체계적 진출 전략을 마련
- 중국 환경시장 진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우수 환경 기업 홍보자료집 배포 등 국내 기업 홍보를 강화

②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북경)를 통해 중국 진출 순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

* 환경 바이어 알선, 수행통역 서비스, 상시 비즈니스 공간 무료 제공 등

② **(사업 지원)** 중국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우수 환경기술 현지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수주를 지원

① 中 현지기업과 국내 환경기업 간 '환경기술 국제 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을 강화

* '04~'11년까지 한·중 공동기술 개발과제 총 64개 지원, 807억원 수출 달성

② 중국 현지 유망 환경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

* '06~'11년까지 7건 지원

③ 한·중 도시생활 폐기물 분야 등 환경산업 협력을 위한 정부 간 MOU 체결과 비즈니스 포럼('12. 5월) 등을 개최

③ **(협력 네트워크)** 프로젝트 발주·시행 주체인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민·관 협력 진출 기회를 확대

① "녹색 환경기술 시범 전파사업*" 등 한·중 공동 매칭펀드 사업을 활성화

* (사례) 하남성 탕인현 하수처리장 건설 시범사업(120억원,

'10~'11년)

② 중국 정부와 주요 발주처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는 등 "글로벌 그린파트너십 포럼*"('12. 6월)을 내실화

* '03~'11년까지 중국 현지 주요 발주처 환경 인력 등 251명 초청

③ 성(省) 단위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 운영하고, 1:1 비즈니스 상담 등을 활성화

* '12년중 산동성, 호남성, 섬서성, 하남성 등 7회 예정

7. 금융·법률 서비스

① **(금융협력)** 상호간 금융기관 진출* 지원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교역확대를 뒷받침

* 국내 금융회사는 중국 내 66개소의 사무소·지점 등 운영, 중국 국유상업은행(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의 국내 지점은 6개소

① 한·중 금융당국 간 MOU* 활용도를 높이고, 정례회의** 등을 통해 금융당국 간 협력 채널을 활성화

* 한·중 금융당국 간 MOU 체결 현황 : 韓금감위-中중감위('01년), 韓금감위-中보감위('02년), 韓금감위-中은감위('04년) 등

** 매년 한·중·일 고위급회의('08년 이후),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06년 이후)를 교대로 주관하여 개최('12. 6월, 제주)

② 업권별 금융협회* 등을 중심으로 국내 초청연수와 포럼, 인적교류 등을 통해 금융 네트워크를 강화

◇ (은행연합회)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12. 7월) 등

◇ (금융투자협회) 이머징마켓 종사자 대상 한국 자본시장 연수 프로그램('12. 7월), 한국자본시장 설명회('12. 9월), 한·중 증권업계 대표단 상호방문 행사('12년말) 등

② **(법률시장 진출)** 국내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추세에 따라 현지 법률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바, 국내 로펌의 중국 법률 시장 진출* 등을 강화

* 국내 로펌 중국 법률시장 진출 현황(11) : 7개 로펌(사무소 9개)

** 중국 진출 외국계로펌 현황(09) : 20개국 198개 로펌(사무소 248개)

① 법무부, 대한변협 주관으로 중국 현지 국내 로펌 홍보 설명회를 신규 추진*하고, 현지 법률정보**를 적기 제공

* 중국 상해에서 개최 「국내로펌 홍보 설명회」(12. 5월) 개최

** 既 발간된 중국 현지법령 해설서(10. 10월)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노동 분야 등 수요가 높은 법률 분야별 해설자료 제작·배포 등을 추진

②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중국 내 「한국법 센터」를 개설**하여 양국 법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

* 국내로펌의 북경·상해 사무소, KOTRA 중국무역관 등에 로스쿨생 인턴 파견(12.상) 추진

** 중국 연변대학에 「한국법 센터」 既 개소(11. 12월)

를 구축하여 현지진출 기업과 관계기관의 수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개선
 • 양국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협상” 등에 반영

③ **(향후 계획)**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투자협력위」 등 양국간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

• 중국 경제여건 변화와 내수 확대 등 정책 기조를 감안, 서비스 협력 분야별 세부 과제를 적기에 신규 추진

•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마련시, 동 분야 중장기 전략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

* 중장기(5년) 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분야별, 권역별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주요 대외경제 이슈에 대한 전략 수립 추진

IV.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① **(추진체계)**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경험전략 T/F*」를 통해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

* 재정부, 지경부, 국토부, 외교부, KOTRA, KIEP 등 관계기관 참여,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적 점검과 추가 개선과제 발굴작업 등 추진

•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핵심사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하에 개선 방안 등을 마련

② **(현장 점검)** 우리 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 애로사항 등은 산·관·학 공동 간담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 서비스 분야 주관 부처별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본 자료는 2012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에서 발표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4. 10(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동 결산내용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 내용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70.5조원, 총세출 258.9조원으로 11.6조원의 결산상 잉여금 발생

- 다음연도 이월액 5.1조원을 제외한 세잉여금은 총 6.5조원(일반회계 5.1조원, 특별회계 1.4조원)

*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의 증가 및 세출예산 집행 감소에 기인

-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GDP 대비 $\Delta 1.1\%$) 적자
-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2.1조원)로 GDP 대비 1.5%(18.6조원) 흑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02.8조원(GDP 대비 32.6%)으로, '10년 국가채무(373.8조원, GDP 대비 31.9%)보다 29.0조원 증가(GDP 대비 0.7%p 증가)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7조원(GDP 대비 34.0%)으로 전년보다 28.5조원 증가(GDP 대비 0.6%p 증가)

* 지방정부 채무(17.8조원)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 국가채권 현재액은 181.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0조원(2.7%) 감소
- 국유재산 현재액은 879.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61.9조원(177.0%) 증가
- 물품 현재액은 10.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원(22.2%) 감소
-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709개 중 578개가 목표치를 달성(81.5%)

참고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1.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결산대상)

일반회계: 49개 중앙관서(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기타특별회계 13, 기업특별회계 5)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총괄)** 총세입 270.5조원, 총세출 258.9조원, 세계 잉여금 6.5조원

(단위: 조원)

구 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총 계	270.5	258.9	11.6	5.1	6.5
일반회계*	214.9	207.4	7.4	2.3	5.1
특별회계**	55.6	51.5	4.2	2.8	1.4

* 49개 중앙관세(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 13개 기타특별회계 및 5개 기업특별회계

- **(세입)** 270.5조원으로 예산(264.1조원) 대비 6.4조 원 초과 징수, 전년 대비 9.3조원 증가
- (일반회계) 예산액(209.9조원) 대비 4.9조원 초과 징수
 - 국세수입 4.2조원* 및 세외수입 0.7조원** 증가
 - * 법인세 +3.6, 소득세 +2.3, 개별소비세 +0.5, 부가세 △1.0 등
 - ** 전년도 이월금 +4.3, 한은 잉여금 +2.0, 공자기금 예수금 △4.5 등
- (특별회계) 예산액(54.2조원) 대비 1.5조원 초과 징수
 - * 농어촌구조개선 +1.4, 우체국예금 +1.4, 교통시설 △1.6 등

- **(세출)** 258.9조원으로 예산현액(269.8조원) 대비 96.0% 집행, 전년 대비 10.3조원 증가

- **(세계잉여금)** 6.5조원(일반회계 5.1조원, 특별회계 1.4조원)

* 결산상 잉여금(11.6조원)에서 '11년 이월액(5.1조원) 제외

예비비

- 2조 3,710억원 지출, 예산액(2조 5,324억원) 대비 93.6% 집행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경비(9,457억원), 재해대책비(6,426억원), 해외파병(740억원), 영유

아보육료 지원(677억원) 등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5,324	23,986	23,710	119	1,495
일반회계	24,000	23,986	23,710	119	171
특별회계	1,324	-	-	-	1,324

예비금

- 국회 등 4개기관에서 1,974백만원 지출(예산 대비 97.7%)
 - 특수활동비(1,273백만원), 직무수행경비(271백만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21	1,984	1,974	0	47
국 회	1,300	1,300	1,300	0	0
대법원	236	226	220	0	16
헌법재판소	25	0	0	0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0	458	455	0	5

성인지(性認知) 결산

- **(집행실적)** 성인지 대상사업의 지출액은 총 10.0조원으로 예산현액 10.2조원 대비 98.2% 집행

(단위: 개, 억원, %)

구 분	소관부처	대상사업 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 계	(34)	241	102,076	100,296	98.2
예산사업	32	197	84,386	83,896	99.4
기금사업	10	44	17,690	16,400	92.7

2. 통합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1.1\%$)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 흑자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에방기금, 고용보험기금
- '11년 예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13.3조원, 관리대상수지 11.5조원 개선
 - ※ 전년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 1.9조원 개선, 관리대상수지 0.5조원 악화

(단위: 조원, %)

구 분	'10년 결산 (A)	'11년			전년 대비 (C-A)
		예산(B)	결산(C)	예산 대비 (C-B)	
1. 통합재정수지(1)	16.7	5.3	18.6	13.3	1.9
(GDP 대비)	(1.4)	(0.4)	(1.5)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2)	29.7	30.3	32.1	1.7	2.4
3. 관리대상수지(1-2)	$\Delta 13.0$	$\Delta 25.0$	$\Delta 13.5$	11.5	$\Delta 0.5$
(GDP 대비)	($\Delta 1.1$)	($\Delta 2.0$)	($\Delta 1.1$)		

* '11년 명목GDP: 1,237.1조원(한은 잠정치)

3. 국가채무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02.8조원(GDP 대비 32.6%)으로 전년 대비 29.0조원 증가 ('11년 예산 대비 14.5조원 감소)
 -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방정부 포함시 국가채무는 420.7조원으로 GDP 대비 34.0%
 - * '10년 결산(392.2조원, 33.4%) 대비 28.5조원 증가, 0.6%p 증가

(단위: 조원, %)

구 분	'10 결산 (A)	'11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 대비 (C-A)	예산 대비 (C-B)
중앙정부(①)	373.8	417.3	402.8	29.0	$\Delta 14.5$
(GDP 대비)	(31.9)	(33.6)	(32.6)	(0.7%p)	($\Delta 1.0$ p)
• 국 채	367.2	411.2	397.1	29.9	$\Delta 14.1$
• 차입금	3.5	3.0	2.5	$\Delta 1.0$	$\Delta 0.5$
• 국고채무부담행위	3.1	3.1	3.3	0.2	0.2
지방정부(②)	18.4	18.2	17.8 ¹⁾	$\Delta 0.6$	$\Delta 0.4$
국가채무(①+②)	392.2	435.5	420.7	28.5	$\Delta 14.8$
(GDP 대비)	(33.4)	(35.1)	(34.0)	(0.6%p)	($\Delta 1.1$ p)

1)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지방정부는 6월말 결산(행안부, 교과부)

4. 국가채권

- (국가채권 현재액) '11년말 현재 국가채권 규모는 181.0조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2.7%) 감소
- 조세채권(3.0조원)*, 사회보장기여금(0.8조원)** 등 증가
 - *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징수액 증가 및 납기연장(납부기한 공휴일[11. 12. 31(토)] → [12. 1. 2(월)])에 따른 납기 미도래(2.5조원) 채권 증가
 - **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한 납기 변경(분기별 말일 → 익월 10일에 따른 납기 미도래(0.7조원) 채권 등 증가
- 융자회수금, 예금및예탁금은 각각 8.4조원***, 1.1조원**** 감소
 - *** 공자기금의 지방채를 결산작성지침(2011회계연도)에 따라 국가채권에서 국유재산으로 분류 ($\Delta 12.4$ 조원)
 - **** 국민연금기금의 정기예금/CD 만기도래에 따른 예금회수 ($\Delta 8.3$ 조원)

종류별 국가채권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10년말	'11년말	구성비	증감액	
				증감액	증감률
융자회수금	1,271,254	1,187,137	(65.6)	△84,117	△6.6
예금및예탁금	402,386	391,257	(21.6)	△11,129	△2.8
조세채권	113,384	143,627	(7.9)	30,243	26.7
경상이전수입	52,259	52,764	(2.9)	505	1.0
사회보장기여금	4,488	12,858	(0.7)	8,371	186.5
기타채권*	15,730	22,281	(1.2)	6,551	41.6
합계	1,859,500	1,809,924	100.0	△49,577	△2.71

* 재산수입, 채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기타수입 등

5. 국유재산·물품

- (국유재산 현재액) 879.4조원, 전년 대비 561.9조원(177.0%) 증가
- '05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가격평가로 503.2조원, 공공용재산의 결산 신규편입(157.4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0년(A)	11년(B)	증감(B-A)	
			금액	증감률
토지	1,085,475	4,378,732	3,293,257	303.4
(면적)	(16,660km ²)	(24,024km ²)	(7,364km ²)	
건물	424,558	432,258	7,700	1.8
유가증권	1,274,254	1,441,016	166,762	13.1
공작물	289,972	2,409,838	2,119,865	731.1
기타*	100,569	131,901	31,333	31.2
합계	3,174,828	8,793,745	5,618,917	177.0

*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 (물품 현재액) 10.2조원, 전년 대비 2.9조원(22.2%) 감소
- 리스물품이 신규로 물품 결산에 반영됨에 따라 전기·통신기기는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비 반영으

로 대부분의 물품 현재액 감소

물품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0년(A)	11년(B)	증감(B-A)	
			금액	증감률
전기·통신기기	14,936	23,353	8,417	56.4
사무용기기	26,779	18,537	△8,242	△30.8
사무용집기	2,777	2,007	△770	△27.7
운반건설기계및차량	23,619	17,983	△5,635	△23.9
기계요소및공작기계	1,894	1,238	△657	△34.7
산업기계	8,626	8,497	△129	△1.5
의료및화학분석기기	9,349	4,558	△4,791	△51.2
물리시험및측정기기	21,745	10,582	△11,162	△51.3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4,492	3,597	△895	△19.9
기타잡기기	16,967	11,717	△5,250	△30.9
합계	131,184	102,069	△29,114	△22.2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 본 자료는 2012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 국고과에서 발표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 잉여금 처리(안)」을 4. 10(화)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1조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
 -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소요에 2.0조원을 우선 사용하고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6조원을 사용
 - 잔여 세계잉여금 1.5조원은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할 계획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규모

(단위: 억원)

'11 세계 잉여금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국가채무상환		④ 세입이입 등
		② 공적자금 상환	③ 채무상환	
51,285	19,586	9,510	6,657	15,532

*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 상환(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기타 채무상환(①, 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11년도 세입이입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2012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 본 자료는 2012년 4월 2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에서 발표한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4. 2일(월)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11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및 「12년 부담금운용 평가계획」을 의결하였음
 - ※ '11년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4.5조원(10년말) 수준

-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11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

- ☞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미흡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은 '15년까지 일몰 기한 설정
- *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국민체육진흥법): 1라운드 입장료에 따라 1인당 1천~3천원 부과(10년 징수액: 195억원)
- ☞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등에 비해 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부담금(4개*)의 가산금 요율 인하
-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가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 * 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현재 일 0.03%(연 11% 수준)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② 부담금 징수율 제고

- ☞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부담금(4개*)은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 '배출부과금(대기)', '배출부과금(수질)', '재활용부과금(자원)', '환경개선부담금'

③ 납부자 권익보호 강화

- ☞ 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령에 명문화(1개*)
- *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은 법령·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홈페이지에도 산정기준 공시
- ☞ 이의신청·환급규정 등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명시(7개*)
- * '배출부과금(수질)',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 '광해방지 의무자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 * 예)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이의신청·환급에 관한 원칙을 법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환경부 규정·지자체 조례에 규정

④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 ☞ 부과목적, 사용용도 등이 유사한 부담금(6개*)의 통합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
- * '재활용부과금·(재활용촉진법)',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자원순환법)'
- * '환경개선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대기)', '배출부과금(대기)'

- **(12년 부담금운용 평가계획)**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중 보건·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의 26개 부담금(약 3.9조원, '10년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또한 개발사업 추진시 각각 부과하는 부담금의 통합징수방안*등 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 * (예) 사업 인·허가시 부과되는 부담금 10개를 1개 고지서로 통합징수
 - 학교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원인자부담금(상·하수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부담금 개요

- **부담금 개념**
- **(법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강화상 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

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

■ 부담금과 유사한 개념

개 념	
조 세	일반재정수입 총당을 목적으로 국민 일반에게 담세능력 기준으로 부과
사회보험료	소득보장을 위해 보험원리에 따라 피보험자간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하여 부과
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로서 부과·징수
행정제재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
준조세	기업 입장에서 본 조세 이외의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예) 부담금, 유사부담금, 사회보험료(기업부담분), 수수료·사용료, 행정제재금(과태료 등) 등

참고 2 부담금 관리제도 현황

- ① **부담금 신설(부과대상 확대 및 요율인상 포함) 타당성심사(법6)**
 - 각 부처가 법령 개정으로 부담금 신설·확대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
 - * 재정부 2차관(위원장),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
 - 동 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요건의 명확성, 재원조성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의견 및 보류(재검토 또는 수정) 판단
- ②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법7)**
 - 전년도 부담금의 징수실적, 사용내역 등을 집계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매년 3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③ 부담금운용평가(법§8)

- 대학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부담금의 1/3씩 부과실태 및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

* 전체 부담금을 3년 주기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10년부터 전체 부담금의 1/3씩 매년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담금 정비, 부담금 통합, 요율 조정, 부과요율 및 기준 등의 상위법령 규정 등 제도개선 권고

* '03년, '06년, '09년, '10년, '11년 등 5차례 부담금평가 실시

** '12년 부담금평가: 보건, 농림, 교육분야 26개 부담금 평가 예정

“공기업 · 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안정적으로 정착”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 결과 –

* 본 자료는 2012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안정적으로 정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 준정부기관(110개)의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적 중심의 보수체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가 당초 '11년 99개, '12년 11개 기관에 도입하기로 계획됐으며, 확인 결과 차질 없이 도입 · 시행 중
 -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0. 6월)에 따라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 정부 권장사항인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11년에 25개*(99개 기관 중), '12년에 3개(11개 기관 중)로 나타남
 - * '11년 전 직원 도입기관: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 * '12년 전 직원 도입기관: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산자원관리공단
- 특히,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차등을 위해 노사합의를 이루는 등 경영진과 근로자가 제도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확산 · 정착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링,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

'11년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운영 현황

- (기본연봉 관련) 정부 권고안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을 매년 2% 이상 차등 적용하도록 제시
- 모든 기관이 간부직에 대한 호봉제를 모두 폐지하고, 기본연봉 인상률을 2% 이상 차등적용하고 있음

	정부 권고안	'11년 계획	'11년 실적
•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2% 이상 차등	평균 2.2% 차등	평균 2.3% 차등

- (성과연봉 관련) 정부 권고안은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을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성과연봉을 상 · 하위 등급 간 최소 2배 이상 차등 지급토록 제시
-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대부분 기관들이 보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준수노력을 강화함
- 성과연봉 차등폭도 평균 2.1배로 정부 권고안을 준수

	정부 권고안	'09년말 실적	'11년 계획	'11년 실적
• 성과연봉 비중		11.4%	평균 22.8%	평균 23.4%
▪ 공기업	30% 이상	14.7%	평균 28.3%	평균 29.5%*
▪ 준정부	20% 이상	6.9%	평균 21.3%	평균 21.7%**
• 차등폭	2배 이상 차등		2.1배	2.1배

* 준수기관: 한국가스공사(34.8%), 한국공항공사(32.9%), 대한주택보증(32.7%), 인천국제공항(32.6%), 한국광물자원공사(32.2%) 등

** 준수기관: 한국고용정보원(31.8%), 예금보험공사(2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29.5%), 한국과학창의재단(28.1%), 무역보험공사(26.6%) 등

- **(총연봉 차등)** 정부 권고안은 총연봉 대비 차등폭*을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 이상 충족하도록 제시

* 총연봉 차등폭은 기본연봉 차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성과연봉 차등효과, 제수당 등에서 발생

- 전체 연봉 평균 차등폭은 22.4% 수준
 - (공기업) 평균 24.7% 차등, 30% 이상 차등 기관은 8개
 - (준정부) 평균 21.7% 차등, 20% 이상 차등 기관은 50개

	정부 권고안	'11년 계획	'11년 실적
• 공기업	30% 이상	평균 24.7%	평균 24.7%*
• 준정부	20% 이상	평균 19.6%	평균 21.7%**

* 준수기관: JDC 40.3%, 한국공항공사 34.1%, 한국광물자원공사 31.5%, 한국철도공사 30.7%, 한국방송광고공사 30.5%, 한국가스공사 30.5% 등

** 준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8.2%, 한국인터넷진흥원 42.1%, 농수산물유통공사 40.0%, 한국과학창의재단 38.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2.2% 등

'12년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

- **(기본연봉 차등)** 11개 기관*이 모두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차등하고 인상률 차등폭도 2%p 이상 확대하여 기준 준수**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축산물HACCP기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1년 통합기관)

** 다만, 축산물HACCP기준원의 차등폭은 1.6%p 수준

- **(성과연봉 비중)** 9개 기관이 권고안(성과연봉 비중 공기업 30%, 준정부 기관 20%)을 준수했고, 2개 기관은 미준수*했음

* 한국남부발전(26.2%), 축산물HACCP기준원(11.2%)은 권고안 미달

- (성과연봉 차등폭) 최고-최저 성과자 간의 성과연봉 차등폭은 11개 기관 모두 권고안 기준(2배)을 충족함

- **(총연봉 차등폭)** 평균 22.5% 수준으로 추가 확대 노력 필요

* (공기업) 평균: 23.8%, 최고 남동발전 27.0%~최저 남부발전 20.3%

(준정부) 평균: 21.5%, 최고 수산자원사업단 30.0%~최저 축산물기준원 12.0%

잠자는 지방세, 국민에게 돌려준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본 자료는 2012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잠자는 지방세, 국민에게 돌려준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는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94.3%가 3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과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 총미환급건수(2,541천건) 중 3만원 이하(2,395천건) : 94.3%(11. 10. 현재)

- 1만원 이하 82.7%, 1만~2만원 8.7%, 2만~3만원 2.9%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약 100억원의 휴면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휴면 지방세의 직권 추당은 그 대상이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법인의 경우, 납세 주체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등 직권 추당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직권 추당은 ①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 ②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

우 그 지방세의 순서로 추당되고, ③ 동일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지방세에 우선 추당하되,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당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4종

-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 재정통계 |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단체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단체별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단체별

연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90	합계	3,665,176	1,879,106	636,413	381,757	145,638	257,001	142,708	315,589
	지방세수입	-	-	-	-	-	-	-	-
	세외수입	2,195,179	1,103,699	293,541	264,712	104,787	160,566	85,070	195,024
	지방교부세	-	-	-	-	-	-	-	-
	지방양여금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보조금	14,478	14,478	-	-	-	6,336	-	8,142
	지방채	1,455,519	760,930	342,873	117,045	40,851	90,100	57,638	112,423
지정재원	-	-	-	-	-	-	-	-	
1991	합계	5,584,111	2,690,846	1,336,550	337,172	191,104	266,985	337,257	221,778
	지방세수입	-	-	-	-	-	-	-	-
	세외수입	5,258,353	2,365,088	1,026,550	337,172	191,104	266,985	322,817	220,460
	지방교부세	-	-	-	-	-	-	-	-
	지방양여금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보조금	325,758	325,758	310,000	-	-	-	14,440	1,318
	지방채	-	-	-	-	-	-	-	-
지정재원	-	-	-	-	-	-	-	-	
1992	합계	5,719,240	2,645,888	1,216,242	258,385	231,928	300,343	346,857	292,133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3,990,242	1,825,735	636,466	253,983	197,970	231,871	266,829	238,616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9,700	19,700	-	-	-	-	19,700	-
	지방채	1,709,298	800,453	579,776	4,402	33,958	68,472	60,328	53,517
지정재원	-	0	-	-	-	-	-	-	
1993	합계	6,917,077	3,524,049	1,542,141	343,387	468,772	532,666	292,806	344,277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4,451,400	1,939,871	461,691	293,175	225,014	458,972	207,888	293,131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23,640	123,640	75,000	-	45,000	-	3,640	-
	지방채	2,342,037	1,460,538	1,005,450	50,212	198,758	73,694	81,278	51,146
지정재원	-	0	-	-	-	-	-	-	
1994	합계	6,815,681	2,674,628	528,870	399,617	544,701	605,670	168,698	427,072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5,011,907	1,881,109	442,092	333,615	196,245	441,267	112,881	355,009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69,928	169,000	-	-	111,000	58,000	-	-
	지방채	1,633,846	624,519	86,778	66,002	237,456	106,403	55,817	72,063
지정재원	-	0	-	-	-	-	-	-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출산 ¹⁾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786,069	847,461	87,657	90,017	80,997	113,547	207,939	92,237	257,503	8,711
	-	-	-	-	-	-	-	-	-	-
	1,091,480	552,088	47,743	71,619	50,634	52,962	86,432	53,269	168,371	8,3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4,590	295,373	39,913	18,398	30,363	60,586	121,508	38,968	89,131	350
	-	-	-	-	-	-	-	-	-	-
	2,893,265	1,298,163	170,477	111,011	187,584	272,271	306,184	121,148	387,953	38,475
	-	-	-	-	-	-	-	-	-	-
	2,893,265	1,298,163	170,477	111,011	187,584	272,271	306,184	121,148	387,953	38,4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73,352	1,183,961	220,348	233,300	183,000	278,684	279,784	178,610	434,076	81,589
	-	-	-	-	-	-	-	-	-	-
	2,164,507	860,434	187,720	192,887	134,648	170,128	200,383	96,439	276,918	44,9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8,845	323,527	32,628	40,413	48,352	108,556	79,401	82,171	157,158	36,639
	-	-	-	-	-	-	-	-	-	-
	3,393,028	1,203,167	233,202	280,999	273,944	279,696	266,255	263,464	491,333	100,968
	-	-	-	-	-	-	-	-	-	-
	2,511,529	962,012	164,041	219,539	171,331	212,151	202,521	180,909	322,925	76,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1,499	241,155	69,161	61,460	102,613	67,545	63,734	82,555	168,408	24,868
	-	-	-	-	-	-	-	-	-	-
	4,141,053	1,565,807	212,485	259,247	310,560	356,665	301,799	300,407	714,463	119,620
	-	-	-	-	-	-	-	-	-	-
	3,130,798	1,250,647	173,706	221,536	182,569	286,731	250,367	209,831	450,445	104,9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8	603	-	-	-	-	-	-	325	-
	1,009,327	314,557	38,779	37,711	127,991	69,934	51,432	90,576	263,693	14,654
	-	-	-	-	-	-	-	-	-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단체별 <계속>

연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95	합계	8,487,429	3,174,707	583,758	352,548	883,931	803,554	233,772	317,144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6,325,846	2,337,423	490,187	282,799	576,857	619,666	177,381	190,533
	지방교부세	3,254	3,254	-	-	3,254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219,923	217,373	-	-	147,914	68,000	959	500
	지방채	-	0	-	-	-	-	-	-
지정재원	1,938,406	616,657	93,571	69,749	155,906	115,888	55,432	126,111	
1996	합계	9,018,407	3,092,707	664,107	454,522	361,004	955,927	287,335	369,812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6,980,426	2,328,603	519,013	357,135	280,810	677,335	200,227	294,083
	법정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54,398	154,398	-	25,312	17,461	108,010	1,992	1,623
지방채	1,883,583	609,706	145,094	72,075	62,733	170,582	85,116	74,106	
1997	합계	9,484,577	3,469,024	671,649	562,276	439,629	1,020,752	264,814	309,816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7,585,694	2,711,567	531,618	513,761	289,310	715,389	230,762	245,837
	지방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84,108	184,108	-	5,567	51,191	119,400	3,078	4,872
지방채	1,714,775	573,349	140,031	42,948	99,128	185,963	30,974	59,107	
1998	합계	8,523,215	3,349,401	685,833	564,165	458,800	981,372	248,343	214,944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7,033,421	2,680,736	577,833	526,719	320,040	640,335	229,455	196,126
	지방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93,146	193,146	-	81	59,666	125,436	3,176	4,787
지방채	1,296,028	474,899	108,000	37,365	79,094	215,601	15,712	14,031	
1999	합계	8,745,024	3,386,962	697,968	634,503	573,896	827,073	214,691	220,063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7,017,570	2,788,941	667,097	580,650	429,039	566,349	196,838	182,969
	지방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75,619	175,619	-	5,638	50,000	110,068	3,258	6,655
지방채	1,551,835	422,402	30,871	48,215	94,857	150,656	14,595	30,439	

(단위: 백만원)

울산 ^{*)}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5,312,722	2,155,401	248,205	361,557	395,280	407,723	386,302	350,535	912,623	95,096
	-	-	-	-	-	-	-	-	-	-
	3,988,423	1,664,034	173,207	277,541	284,362	305,380	286,489	235,363	688,482	73,5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50	-	-	2,550	-	-	-	-	-	-
	-	-	-	-	-	-	-	-	-	-
	1,321,749	491,367	74,998	81,466	110,918	102,343	99,813	115,172	224,141	21,531
	6,025,700	2,524,485	386,800	393,120	324,736	446,482	417,276	343,895	1,080,555	108,351
	-	-	-	-	-	-	-	-	-	-
	4,751,823	2,192,680	272,166	331,485	243,289	325,441	331,720	231,744	754,161	69,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3,877	331,805	114,634	61,635	81,447	121,041	85,556	112,151	326,394	39,214
200,088	6,015,553	2,869,398	354,332	369,700	368,455	467,151	441,191	285,766	754,959	104,601
-	-	-	-	-	-	-	-	-	-	-
184,890	4,874,127	2,424,916	281,946	309,177	245,812	378,416	361,333	195,530	605,669	71,3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98	1,141,426	444,482	72,386	60,523	122,643	88,735	79,858	90,236	149,290	33,273
195,944	5,173,814	2,452,452	352,048	336,893	256,184	310,798	393,338	275,444	701,671	94,986
-	-	-	-	-	-	-	-	-	-	-
190,228	4,352,685	2,033,409	297,780	321,462	211,225	260,556	332,160	190,599	636,264	69,2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96	821,129	419,043	54,268	15,431	44,959	50,242	61,178	84,845	65,407	25,756
218,768	5,358,062	2,459,415	312,928	366,583	270,524	300,886	437,050	316,299	590,615	60,868
-	-	-	-	-	-	-	-	-	-	-
165,999	4,228,629	1,996,609	235,432	361,547	149,771	243,481	375,113	215,19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769	1,129,433	462,806	77,496	5,036	120,753	57,405	61,937	101,106	219,719	23,175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단체별 <계속>

연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000	합계	8,866,793	3,347,020	695,388	742,076	671,901	555,317	186,949	241,688
	지방세	-	0						
	세외수입	7,703,630	2,917,802	683,388	681,098	524,896	492,672	172,121	198,901
	지방교부세	-	0						
	증액교부금	-	0						
	지방양여금	-	0						
	조정교부금	-	0						
	재정보전금	-	0						
	보조금	167,772	167,771		6,867	63,040	2,100	29	6,760
지방채	995,391	261,447	12,000	54,111	83,965	60,545	14,799	36,027	
2001	합계	10,092,778	3,619,415	765,854	817,805	652,257	693,310	221,626	210,991
	지방세	-	0	-	-	-	-	-	-
	세외수입	8,931,223	3,304,529	713,754	754,420	602,553	623,776	204,754	190,323
	지방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보조금	49,004	49,004	-	18,324	21,535	2,301	2,376	4,468
지방채	1,112,551	265,882	52,100	45,061	28,169	67,233	14,496	16,200	
2002	합계	11,405,364	3,625,224	815,992	798,272	502,211	833,863	220,497	190,878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9,995,368	3,318,841	777,875	697,864	478,556	764,502	208,629	177,091
	지방교부세	2,593	-	-	-	-	-	-	-
	증액교부금	-	-	-	-	-	-	-	-
	지방양여금	32,411	3,665	-	-	3,665	-	-	-
	조정교부금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28,903	23,764	-	9,445	6,591	1,578	1,374	4,775
지방채	1,346,091	278,954	38,118	90,964	13,398	67,783	10,494	9,012	
2003	합계	12,011,187	3,648,033	803,062	851,519	393,363	922,148	218,334	191,711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0,501,346	3,352,326	763,062	753,603	367,905	854,749	207,873	188,929
	지방교부세	1,230	-	-	-	-	-	-	-
	증액교부금	37,300	-	-	-	-	-	-	-
	지방양여금	46,010	3,513	-	-	3,513	-	-	-
	조정교부금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26,501	14,896	-	4,517	8,051	1,050	1,176	102
지방채	1,398,801	277,298	40,000	93,399	13,894	66,349	9,285	2,680	
2004	합계	13,306,615	3,880,280	808,738	914,154	406,506	959,086	229,218	259,688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1,460,580	3,603,016	808,738	822,043	372,031	894,662	217,863	234,955
	지방교부세	749	-	-	-	-	-	-	-
	증액교부금	40,040	-	-	-	-	-	-	-
	지방양여금	24,395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56,418	25,804	-	1,945	21,111	645	158	1,944
지방채	1,724,434	251,461	-	90,166	13,364	63,780	11,197	22,789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울산 ^{*)}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53,701	5,519,773	2,493,506	335,320	383,100	273,247	366,816	403,861	397,007	775,548	91,368
-	-	-	-	-	-	-	-	-	-	-
164,726	4,785,828	2,120,455	309,875	377,960	141,027	293,294	339,847	378,154	757,353	67,8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975	1	-	-	-	-	-	1	-	-	-
-	733,944	373,051	25,445	5,140	132,220	73,522	64,013	18,853	18,195	23,505
257,572	6,473,363	2,993,830	348,840	393,874	372,572	433,590	421,611	499,709	914,963	94,374
-	-	-	-	-	-	-	-	-	-	-
214,949	5,626,694	2,613,651	276,098	342,707	283,545	364,530	330,563	466,511	881,506	67,5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623	846,669	380,179	72,742	51,167	89,027	69,060	91,048	33,198	33,457	26,791
263,510	7,780,141	3,493,795	496,293	456,164	474,581	546,766	639,306	645,046	905,964	122,225
-	-	-	-	-	-	-	-	-	-	-
214,324	6,676,526	3,016,531	402,901	398,814	388,632	474,621	542,989	531,984	828,716	91,338
-	2,593	-	-	-	1,750	-	-	-	-	843
-	-	-	-	-	-	-	-	-	-	-
-	28,746	20,594	746	-	-	-	-	7,405	-	-
-	-	-	-	-	-	-	-	-	-	-
-	-	-	-	-	-	-	-	-	-	-
-	5,139	-	2,394	-	2,745	-	-	-	-	-
49,185	1,067,137	456,670	90,252	57,350	81,454	72,145	96,317	105,657	77,248	30,044
267,896	8,363,154	3,807,042	576,881	510,932	587,521	507,670	681,958	746,860	805,519	138,770
-	-	-	-	-	-	-	-	-	-	-
216,204	7,149,020	3,394,295	446,387	439,927	436,991	436,240	538,345	598,245	749,289	109,300
-	1,230	-	328	-	-	-	-	-	-	902
-	37,300	-	-	-	-	-	37,300	-	-	-
-	42,497	19,158	-	-	-	-	-	22,697	642	-
-	-	-	-	-	-	-	-	-	-	-
-	-	-	-	-	-	-	-	-	-	-
-	11,605	-	7,917	1,783	733	55	-	-	-	1,117
51,692	1,121,503	393,590	122,250	69,222	149,797	71,375	106,313	125,918	55,588	27,451
302,890	9,426,335	4,062,121	581,715	589,577	767,520	655,596	867,732	857,208	898,426	146,440
-	-	-	-	-	-	-	-	-	-	-
252,724	7,857,564	3,191,906	486,002	512,775	678,706	588,434	732,664	726,616	817,651	122,809
-	749	49	-	-	-	-	-	700	-	-
-	40,040	-	-	-	-	-	40,040	-	-	-
-	24,395	14,786	-	-	-	-	-	9,609	-	-
-	-	-	-	-	-	-	-	-	-	-
-	-	-	-	-	-	-	-	-	-	-
-	30,615	26,470	-	-	300	-	-	419	3,426	-
50,166	1,472,972	828,909	95,713	76,802	88,515	67,162	95,028	119,864	77,349	23,631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단체별 <계속>

연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005	합계	13,876,667	4,252,435	853,891	937,238	380,100	1,176,439	288,381	320,093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2,086,770	3,836,074	853,891	845,015	348,565	1,039,986	240,107	274,704
	지방교부세	32	-	-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83,884	61,534	-	18,665	17,178	8,515	4,830	5,494
200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705,981	354,827	-	73,559	14,357	127,938	43,443	39,895
	합계	13,950,486	4,348,908	1,024,846	734,823	383,750	1,228,112	261,558	391,196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1,859,627	3,778,958	875,920	687,251	342,544	1,082,162	199,885	334,480
	지방교부세	2,027	-	-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2007	보조금	101,429	79,061	-	16,009	20,640	24,751	9,618	2,35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87,403	490,890	148,926	31,562	20,566	121,199	52,055	54,364
	합계	14,613,653	4,595,746	1,016,290	700,355	425,638	1,390,209	326,512	370,892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2,359,431	3,952,772	1,016,290	646,327	383,558	1,042,022	266,427	313,242
	지방교부세	5,519	-	-	-	-	-	-	-
200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163,741	90,939	-	14,936	27,337	26,751	1,338	4,13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84,962	552,035	-	39,092	14,743	321,435	58,747	53,519
	합계	14,770,853	4,666,308	1,083,318	696,846	494,670	1,388,007	345,751	316,972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2,566,480	4,167,632	896,970	596,223	419,585	1,388,007	284,461	260,658
2009	지방교부세	-	-	-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98,313	83,543	1,719	25,859	48,764	-	3,184	3,34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106,060	415,133	184,628	74,764	26,321	-	58,106	52,972
	합계	15,823,717	4,767,715	982,913	671,897	456,534	1,597,120	380,918	298,618
	지방세	-	-	-	-	-	-	-	-
2009	세외수입	13,022,202	4,176,910	931,944	568,781	388,702	1,474,414	295,786	216,749
	지방교부세	-	-	-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250,870	226,421	500	31,199	42,999	122,675	7,266	2,987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550,644	364,383	50,470	71,917	24,833	31	77,866	78,881

재 정 통 계

(단위: 백만원)

울 산 ¹⁾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96,293	9,624,232	4,177,247	552,801	562,244	877,370	684,909	914,451	772,234	944,064	138,912
-	-	-	-	-	-	-	-	-	-	-
233,806	8,250,696	3,576,269	446,528	486,741	771,255	608,506	800,509	626,685	823,894	110,309
-	32	32	-	-	-	-	-	-	-	-
-	-	-	-	-	-	-	-	-	-	-
6,852	22,350	1,000	8,728	-	-	-	3,129	9,493	-	-
55,635	1,351,154	599,946	97,545	75,503	106,116	76,403	110,813	136,056	120,169	28,602
324,625	9,601,577	4,307,606	600,490	517,342	828,588	624,039	841,955	757,943	980,716	142,897
-	-	-	-	-	-	-	-	-	-	-
256,716	8,080,669	3,677,945	504,052	429,004	718,225	533,272	732,047	625,896	752,372	107,856
-	2,027	1,945	-	-	-	-	-	-	82	-
-	-	-	-	-	-	-	-	-	-	-
5,691	22,368	5,938	-	12,214	-	1,891	-	-	-	2,325
62,217	1,496,513	621,778	96,438	76,125	110,363	88,876	109,908	132,047	228,261	32,716
365,850	10,017,907	4,778,609	641,306	517,883	904,518	628,918	651,503	626,934	1,133,523	134,713
-	-	-	-	-	-	-	-	-	-	-
284,906	8,406,659	4,192,256	517,055	421,642	782,562	533,581	530,267	488,185	841,420	99,691
-	5,519	-	-	-	-	-	-	-	5,519	-
-	-	-	-	-	-	-	-	-	-	-
16,445	72,802	-	2,790	15,370	-	-	8,337	3,668	41,168	1,469
64,499	1,532,926	586,353	121,461	80,871	121,956	95,337	112,900	135,081	245,416	33,553
340,744	10,104,545	5,093,993	608,504	457,662	780,336	565,467	620,653	626,616	1,199,036	152,279
-	-	-	-	-	-	-	-	-	-	-
321,728	8,398,848	4,377,908	495,557	371,401	642,828	473,843	494,187	506,341	933,862	102,920
-	-	-	-	-	-	-	-	-	-	-
-	-	-	-	-	-	-	-	-	-	-
676	14,770	-	-	-	-	-	-	-	-	14,770
18,340	1,690,927	716,085	112,947	86,261	137,508	91,624	126,466	120,275	265,174	34,589
379,715	11,056,002	5,935,080	582,495	379,903	732,821	620,366	652,260	687,482	1,306,907	158,689
-	-	-	-	-	-	-	-	-	-	-
300,534	8,845,292	4,927,054	444,862	338,071	571,285	440,074	479,812	499,465	1,052,943	91,725
-	-	-	-	-	-	-	-	-	-	-
-	-	-	-	-	-	-	-	-	-	-
18,796	24,449	-	-	-	-	-	-	-	-	24,449
60,385	2,186,261	1,008,026	137,633	41,831	161,536	180,292	172,447	188,017	253,963	42,515

주: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참조.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 『지방결산현황』 - 지방재정연감 - 결산면, 순계자료 - 『지방자치단체 결산 단계별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단체별

연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90	합계	3,757,841	1,652,832	1,237,436	90,913	152,043	66,039	70,009	36,391
	지방세수입	-	-	-	-	-	-	-	-
	세외수입	3,149,172	1,339,253	943,195	84,813	152,043	60,491	62,319	36,391
	지방교부세	-	-	-	-	-	-	-	-
	지방양여금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보조금	134,299	134,299	133,025	-	-	1,273	-	-
	지방채	474,371	179,281	161,216	6,100	-	4,275	7,690	-
지정재원	-	-	-	-	-	-	-	-	
1991	합계	4,254,313	1,577,268	1,027,769	226,450	77,280	116,130	60,423	69,216
	지방세수입	3,961,599	1,379,049	875,439	216,305	70,552	109,863	56,379	50,511
	세외수입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지방양여금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보조금	292,713	198,220	152,331	10,145	6,728	6,267	4,044	18,705
	지방채	-	-	-	-	-	-	-	-
지정재원	-	-	-	-	-	-	-	-	
1992	합계	6,894,043	2,968,782	1,755,349	735,152	105,206	207,614	74,795	90,666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4,880,252	2,574,467	1,560,202	707,907	60,096	177,334	33,030	35,898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1,177,188	87,315	-	-	35,341	26,307	-	25,667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394,781	242,499	167,785	10,445	6,969	3,973	33,693	19,634
	지방채	441,822	64,501	27,362	16,800	2,800	-	8,072	9,467
지정재원	-	0	-	-	-	-	-	-	
1993	합계	7,177,159	2,866,638	1,543,842	610,529	241,202	216,908	167,828	86,329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5,119,629	2,417,622	1,410,541	550,132	193,790	183,044	42,434	37,681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1,360,825	129,364	-	-	39,083	28,731	34,557	26,993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301,966	131,837	93,333	13,431	7,979	5,133	5,201	6,760
	지방채	394,739	187,815	39,968	46,966	350	-	85,636	14,895
지정재원	-	0	-	-	-	-	-	-	
1994	합계	7,321,723	4,406,525	3,212,038	479,593	413,813	189,952	77,668	33,461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5,180,606	2,683,808	1,644,423	403,596	381,784	168,847	58,375	26,783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624,733	418,620	337,310	46,295	15,029	7,145	6,163	6,678
	지방채	1,516,384	1,304,097	1,230,305	29,702	17,000	13,960	13,130	-
지정재원	-	0	-	-	-	-	-	-	

(단위: 백만원)

울산 ¹⁾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105,009	411,242	113,920	95,119	183,971	148,027	179,426	215,362	727,042	30,898
	-	-	-	-	-	-	-	-	-	-
	1,809,919	366,069	82,523	83,031	181,246	124,380	157,087	197,590	599,194	18,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5,090	45,173	31,398	12,089	2,725	23,648	22,340	17,772	127,847	12,099
	-	-	-	-	-	-	-	-	-	-
	2,677,044	451,597	146,375	131,877	237,392	253,736	365,449	357,032	701,116	32,471
	2,582,551	449,544	144,142	124,177	220,593	233,951	340,383	357,032	681,939	30,7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494	2,053	2,233	7,700	16,798	19,784	25,066	-	19,177	1,681
	-	-	-	-	-	-	-	-	-	-
	-	-	-	-	-	-	-	-	-	-
	3,925,261	856,323	242,652	229,108	442,171	364,769	383,111	541,413	787,376	78,338
	-	-	-	-	-	-	-	-	-	-
	2,305,785	535,124	109,106	129,517	293,658	175,214	201,227	309,236	514,165	38,538
	-	-	-	-	-	-	-	-	-	-
	1,089,873	189,239	103,072	82,755	106,280	118,429	136,166	164,767	154,855	34,310
	-	-	-	-	-	-	-	-	-	-
	152,282	15,487	12,338	9,095	19,132	22,908	27,529	20,714	23,175	1,904
	377,321	116,473	18,136	7,741	23,101	48,218	18,189	46,696	95,181	3,586
	-	-	-	-	-	-	-	-	-	-
	4,310,521	891,832	322,030	222,303	481,772	417,524	396,267	565,063	922,486	91,244
	-	-	-	-	-	-	-	-	-	-
	2,702,007	671,585	159,112	107,946	316,413	233,631	229,749	338,923	599,054	45,594
	-	-	-	-	-	-	-	-	-	-
	1,231,461	191,504	133,360	99,749	132,508	126,572	130,535	192,823	188,413	35,997
	-	-	-	-	-	-	-	-	-	-
	170,129	22,893	14,822	9,379	19,471	24,591	29,158	25,663	21,633	2,519
	206,924	5,850	14,736	5,229	13,380	32,730	6,825	7,654	113,386	7,134
	-	-	-	-	-	-	-	-	-	-
	2,915,198	711,600	138,135	82,013	295,837	318,613	261,175	376,348	678,742	52,735
	-	-	-	-	-	-	-	-	-	-
	2,496,798	659,661	119,652	68,362	256,262	275,363	221,353	309,389	538,488	48,2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6,113	32,523	12,483	12,363	22,539	23,796	28,274	30,961	39,670	3,504
	212,287	19,416	6,000	1,288	17,036	19,454	11,548	35,998	100,584	963
	-	-	-	-	-	-	-	-	-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단체별 <계속>

연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95	합계	7,224,126	4,306,441	2,731,099	837,632	182,109	167,545	272,842	115,214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5,388,159	2,831,919	1,713,512	502,046	150,568	157,805	211,569	96,419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670,338	468,559	346,272	79,087	14,792	9,740	9,573	9,095
	지방채	-	0	-	-	-	-	-	-
지정재원	1,165,629	1,005,963	671,315	256,499	16,749	-	51,700	9,700	
1996	합계	9,071,825	5,783,893	2,860,629	1,312,818	846,935	223,212	406,845	133,454
	지방세수입	1,735	1,735	1,735	-	-	-	-	-
	세외수입	6,741,934	3,837,441	1,729,045	981,322	511,187	174,209	317,973	123,705
	법정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907,233	663,903	340,001	109,550	173,518	12,213	18,872	9,749
지방채	1,420,923	1,280,814	789,848	221,946	162,230	36,790	70,000	-	
1997	합계	9,322,054	5,682,217	2,570,605	1,366,472	779,691	214,304	430,907	187,288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6,885,812	3,841,286	1,698,769	824,952	593,744	192,432	309,918	93,297
	법정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805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028,274	731,035	285,344	210,084	72,513	21,872	66,955	69,491
지방채	1,107,163	1,109,896	586,492	331,436	113,434	-	54,034	24,500	
1998	합계	9,608,769	5,933,404	2,480,028	1,587,828	759,682	233,767	518,656	271,293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6,890,882	3,708,146	1,681,902	775,032	481,852	206,111	354,791	142,782
	법정교부세	3,200	400	150	-	250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5,976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397,866	981,629	319,603	280,930	123,374	21,987	130,875	97,739
지방채	1,310,845	1,243,229	478,373	531,866	154,206	5,669	32,990	30,772	
1999	합계	10,608,099	6,827,803	2,922,314	1,891,276	682,411	226,215	563,731	429,573
	지방세수입	47	13	-	-	-	13	-	-
	세외수입	6,974,197	3,881,041	1,697,427	1,047,820	289,097	191,991	307,084	284,996
	법정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620,634	1,039,221	412,761	211,456	126,289	33,169	140,047	105,722
지방채	2,013,221	1,907,528	812,126	632,000	267,025	1,042	116,600	38,855	

재 정 통 계

(단위: 백만원)

울 산 ^{*)}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917,685	676,447	180,219	92,243	305,899	361,600	339,319	336,383	570,194	55,381
	-	-	-	-	-	-	-	-	-	-
	2,556,240	623,600	134,622	71,434	271,980	298,484	292,105	285,778	527,457	50,7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79	32,614	14,278	13,682	21,443	26,365	30,181	30,485	30,046	2,685
	-	-	-	-	-	-	-	-	-	-
	159,666	20,233	31,319	7,127	12,476	36,751	17,033	20,120	12,691	1,916
	3,287,932	735,886	200,145	113,963	377,789	479,804	416,768	355,451	547,427	60,699
	-	-	-	-	-	-	-	-	-	-
	2,904,493	689,774	162,269	90,179	341,939	430,783	349,251	294,673	495,380	50,2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3,330	37,773	19,580	16,341	26,821	23,710	40,777	37,786	36,826	3,716
	140,109	8,339	18,296	7,443	9,029	25,311	26,740	22,992	15,221	6,738
132,950	3,639,837	867,491	227,206	152,159	347,147	438,870	483,336	394,250	506,634	222,744
-	-	-	-	-	-	-	-	-	-	-
128,174	3,044,526	805,259	179,272	122,923	302,640	402,872	404,157	321,347	451,028	55,028
-	-	-	-	-	-	-	-	-	-	-
-	-	-	-	-	-	-	-	-	-	-
-	805	-	-	-	-	-	-	-	805	-
-	-	-	-	-	-	-	-	-	-	-
4,776	297,239	55,904	23,742	20,009	30,762	24,863	43,885	46,999	45,095	5,980
-	297,267	6,328	24,192	9,227	13,745	11,135	35,294	25,904	9,706	161,736
82,150	3,675,365	977,707	218,780	161,784	346,701	483,327	506,211	367,275	477,972	135,608
-	-	-	-	-	-	-	-	-	-	-
65,676	3,182,736	882,934	183,577	134,223	294,278	438,052	431,445	280,308	410,604	127,315
-	2,800	200	-	-	1,500	-	-	-	1,100	-
-	-	-	-	-	-	-	-	-	-	-
-	5,976	4,140	-	-	-	-	-	-	1,836	-
-	-	-	-	-	-	-	-	-	-	-
7,121	416,237	86,710	32,883	25,169	39,417	39,315	69,271	60,774	55,568	7,130
9,353	67,616	3,723	2,320	2,392	11,506	5,960	5,495	26,193	8,864	1,163
112,283	3,780,296	945,252	224,736	161,882	381,241	441,021	578,118	409,701	525,153	113,192
-	34	-	29	5	-	-	-	-	-	-
62,626	3,093,156	828,780	162,920	128,247	316,462	377,656	436,075	315,535	426,023	101,4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77	581,413	100,500	42,365	33,630	55,102	56,071	128,747	80,406	75,328	9,264
39,880	105,693	15,972	19,422	-	9,677	7,294	13,296	13,760	23,802	2,470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단체별 <계속>

연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000	합계	10,656,130	6,551,935	2,998,963	1,071,903	873,998	461,338	564,923	498,043
	지방세	189	69		69				
	세외수입	7,174,130	3,924,670	1,818,184	813,753	254,570	323,219	355,390	309,076
	지방교부세	-	0						
	증액교부금	-	0						
	지방양여금	-	0						
	조정교부금	-	0						
	재정보전금	-	0						
보조금	2,071,988	1,300,824	404,828	189,081	299,983	115,655	145,692	133,296	
지방채	1,409,823	1,326,372	775,951	69,000	319,445	22,464	63,841	55,671	
2001	합계	12,442,095	7,078,560	2,789,181	1,476,785	880,994	587,458	700,509	535,955
	지방세	199	0	-	-	-	-	-	-
	세외수입	8,714,477	4,540,010	1,878,380	1,019,768	294,952	417,947	483,076	360,567
	지방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보조금	2,438,322	1,295,979	234,964	243,432	372,508	121,247	166,433	135,037	
지방채	1,289,097	1,242,571	675,837	213,585	213,534	48,264	51,000	40,351	
2002	합계	14,594,241	8,329,274	3,594,291	1,672,752	743,439	763,863	835,409	544,351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0,171,110	5,255,302	2,240,398	1,040,473	294,297	582,998	625,867	358,601
	지방교부세	7,197	4,943	3,043	-	1,000	500	-	400
	증액교부금	-	-	-	-	-	-	-	-
	지방양여금	135,812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2,447,760	1,246,568	279,718	228,067	314,988	109,402	149,542	141,350	
지방채	1,832,362	1,822,461	1,071,131	404,212	133,154	70,964	60,000	44,000	
2003	합계	14,210,806	7,515,748	3,462,109	1,018,425	806,566	815,542	748,985	527,586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0,696,210	5,345,897	2,584,950	798,902	326,161	662,448	552,417	319,171
	지방교부세	25,793	22,293	-	-	20,053	840	-	1,400
	증액교부금	10,000	10,000	-	10,000	-	-	-	-
	지방양여금	85,133	1,860	-	-	-	-	-	1,860
	조정교부금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2,512,278	1,280,889	313,129	207,423	316,891	126,035	136,568	146,155	
지방채	881,392	854,810	564,030	2,100	143,462	26,219	60,000	59,000	
2004	합계	15,305,961	7,680,929	3,347,372	1,075,363	999,263	872,870	703,051	525,347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1,419,959	5,379,385	2,497,715	861,601	440,634	667,891	509,012	275,233
	지방교부세	4,951	4,252	2,052	-	1,000	-	-	1,200
	증액교부금	-	-	-	-	-	-	-	-
	지방양여금	49,232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2,665,890	1,386,827	359,286	213,762	309,403	151,059	134,039	188,915	
지방채	1,165,930	910,465	488,319	-	248,226	53,920	60,000	60,000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울산 ^{*)}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82,767	4,104,195	1,163,113	246,502	183,339	442,901	334,749	586,546	456,487	596,710	93,848
	120				120					
50,478	3,249,460	908,854	194,477	136,842	355,413	255,246	464,315	346,640	509,750	77,923
	-									
	-									
	-									
	-									
	-									
12,289	771,164	229,467	49,482	46,497	65,128	72,709	113,328	97,127	85,096	12,330
20,000	83,451	24,792	2,543		22,240	6,794	8,903	12,720	1,864	3,595
107,678	5,363,535	1,713,518	294,962	247,088	479,435	368,945	695,290	594,298	878,884	91,115
-	199	-	-	-	-	-	199	-	-	-
85,320	4,174,467	1,301,530	220,283	180,067	392,651	252,181	558,960	448,185	754,505	66,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358	1,142,343	387,358	73,130	66,886	85,162	115,386	134,070	137,818	120,223	22,310
-	46,526	24,630	1,549	135	1,622	1,378	2,061	8,295	4,156	2,700
175,169	6,264,967	2,199,800	389,269	282,989	579,375	353,761	748,296	605,292	1,011,857	94,328
-	-	-	-	-	-	-	-	-	-	-
112,667	4,915,808	1,804,383	252,115	213,066	468,469	218,081	572,857	456,286	856,197	74,354
-	2,254	1,020	134	-	-	-	800	-	300	-
-	-	-	-	-	-	-	-	-	-	-
-	135,812	66,532	55,793	-	601	-	6,106	-	6,780	-
-	-	-	-	-	-	-	-	-	-	-
-	-	-	-	-	-	-	-	-	-	-
23,501	1,201,191	327,865	80,781	69,379	109,354	132,679	168,033	148,442	144,683	19,975
39,000	9,901	-	446	544	951	3,000	500	563	3,897	-
136,535	6,695,058	2,152,700	401,718	345,581	635,083	517,162	750,391	717,975	985,542	188,904
-	-	-	-	-	-	-	-	-	-	-
101,847	5,350,313	1,857,223	291,488	270,080	510,184	386,681	499,261	555,078	815,899	164,419
-	3,500	-	1,200	-	300	500	300	1,200	-	-
-	-	-	-	-	-	-	-	-	-	-
-	83,273	45,614	26,806	-	-	-	1,325	-	9,528	-
-	-	-	-	-	-	-	-	-	-	-
-	-	-	-	-	-	-	-	-	-	-
34,688	1,231,390	249,863	78,100	75,501	109,399	129,981	249,505	161,127	153,427	24,485
-	26,582	-	4,124	-	15,200	-	-	570	6,688	-
157,663	7,625,032	2,879,981	461,115	401,828	654,471	581,084	692,073	731,029	935,693	287,757
-	-	-	-	-	-	-	-	-	-	-
127,299	6,040,573	2,340,400	343,327	327,953	538,697	429,353	497,718	553,669	747,209	262,247
-	699	20	79	-	-	500	100	-	-	-
-	-	-	-	-	-	-	-	-	-	-
-	49,232	5,406	25,147	-	3,304	-	495	1,744	13,137	-
-	-	-	-	-	-	-	-	-	-	-
-	-	-	-	-	-	-	-	-	-	-
30,364	1,279,062	314,405	84,816	73,875	111,597	149,635	182,360	173,777	163,087	25,510
-	255,465	219,750	7,746	-	873	1,596	11,400	1,839	12,261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단체별 <계속>

연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005	합계	14,823,653	7,855,724	3,673,943	1,209,790	865,861	862,320	595,723	517,329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0,671,640	5,347,673	2,606,297	962,204	415,659	655,053	379,735	229,483
	지방교부세	6,950	5,402	-	-	5,402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3,063,964	1,566,225	338,541	247,586	304,488	207,267	172,988	263,845
200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81,099	936,424	729,104	-	140,312	-	43,000	24,000
	합계	16,783,305	8,277,331	3,681,258	1,766,886	672,231	916,657	602,732	462,164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1,656,522	5,304,443	2,618,039	976,668	330,393	664,975	381,902	201,763
	지방교부세	7,433	5,900	-	-	5,000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2007	보조금	3,946,083	2,008,908	457,176	645,816	176,766	232,420	192,530	260,40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73,268	958,080	606,044	144,402	160,071	19,263	28,300	-
	합계	18,899,835	9,565,873	4,572,173	1,973,086	678,624	884,969	516,109	726,267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2,492,622	6,005,454	3,265,586	797,842	290,937	619,638	302,580	571,820
	지방교부세	4,406	1,500	-	-	-	1,000	-	-
200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5,461,952	2,705,484	753,334	1,041,145	263,349	262,183	173,936	154,44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940,855	853,434	553,253	134,100	124,339	2,149	39,593	-
	합계	18,994,086	9,670,280	4,748,614	1,797,672	743,272	1,027,365	396,462	597,557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12,083,061	5,645,083	3,108,448	669,810	313,809	603,055	224,138	425,710
2009	지방교부세	12,993	7,693	1,000	2,000	-	4,193	-	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5,585,557	2,980,550	790,125	1,035,684	337,872	414,117	172,323	171,20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312,475	1,036,954	849,041	90,178	91,591	6,000	-	144
	합계	18,912,529	10,223,435	4,756,294	1,789,269	971,969	1,470,774	453,834	493,959
	지방세	-	-	-	-	-	-	-	-
2009	세외수입	11,808,068	5,827,182	3,369,443	546,370	388,408	664,119	285,086	362,590
	지방교부세	21,309	14,341	1,719	100	-	11,822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보조금	5,597,864	3,165,685	696,716	1,122,508	457,726	530,198	167,749	131,319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485,288	1,216,228	688,416	120,292	125,835	264,635	1,000	50

재 정 통 계

(단위: 백만원)

울 산 ¹⁾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30,759	6,967,929	2,162,732	524,980	477,697	606,102	523,782	734,577	772,183	920,676	245,201
-	-	-	-	-	-	-	-	-	-	-
99,241	5,323,967	1,719,051	458,683	382,353	473,794	352,786	514,143	547,057	727,777	148,323
-	1,549	1,014	-	-	-	-	400	-	135	-
-	-	-	-	-	-	-	-	-	-	-
31,511	1,497,738	329,067	57,318	95,344	124,008	167,396	215,181	224,626	187,921	96,878
7	144,675	113,601	8,978	-	8,300	3,600	4,853	500	4,843	-
175,402	8,505,974	3,421,172	515,184	469,577	784,901	523,982	789,265	756,633	894,327	350,932
-	-	-	-	-	-	-	-	-	-	-
130,703	6,352,078	2,831,871	409,211	330,608	613,101	297,173	531,351	510,099	663,278	165,385
900	1,533	31	600	-	-	-	-	902	-	-
-	-	-	-	-	-	-	-	-	-	-
43,800	1,937,175	395,128	105,373	138,969	166,799	224,809	249,222	245,633	229,049	182,194
-	215,188	194,142	-	-	5,000	-	8,692	-	2,000	3,354
214,644	9,333,962	3,568,150	615,404	424,661	795,154	584,447	948,142	1,037,515	1,025,759	334,731
-	-	-	-	-	-	-	-	-	-	-
157,053	6,487,167	2,856,737	393,477	256,896	590,100	278,987	590,953	676,955	651,598	191,462
500	2,906	-	-	-	500	1,200	1,000	206	-	-
-	-	-	-	-	-	-	-	-	-	-
57,092	2,756,467	658,851	221,927	167,765	204,554	304,260	340,928	360,353	354,561	143,268
-	87,421	52,561	-	-	-	-	15,260	-	19,600	-
359,338	9,323,806	3,619,195	536,221	409,658	821,102	599,329	981,344	1,021,420	998,754	336,783
-	-	-	-	-	-	-	-	-	-	-
300,114	6,437,978	2,857,519	355,914	266,209	506,050	298,387	640,252	673,508	674,791	165,347
-	5,300	500	-	-	3,500	800	500	-	-	-
-	-	-	-	-	-	-	-	-	-	-
59,225	2,605,007	642,068	165,323	143,247	231,545	281,943	329,888	329,167	314,012	167,815
-	275,522	119,108	14,985	201	80,007	18,200	10,705	18,745	9,951	3,620
287,335	8,689,094	3,098,061	476,433	412,461	748,037	562,313	938,528	1,126,988	993,725	332,547
-	-	-	-	-	-	-	-	-	-	-
211,166	5,980,886	2,416,447	326,082	272,134	469,563	289,641	626,950	754,230	672,402	153,438
700	6,968	-	-	968	-	-	1,000	4,000	1,000	-
-	-	-	-	-	-	-	-	-	-	-
59,469	2,432,178	603,763	150,352	139,358	197,650	266,673	294,451	311,836	290,986	177,109
16,000	269,061	77,850	-	-	80,824	6,000	16,127	56,922	29,337	2,000

주 :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 『지방결산현황』 - 지방재정연감 - 결산편, 순계자료 - “지방자치단체 결산 단계별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오피니언] 납세정보의 공공성과 개인비밀 보호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 윌리엄스 대학 바키자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상위 1% 소득 계층의 평균 가구소득은 120만 달러이며, 이들 전체 소득은 모든 계층 소득의 23.5%를 차지한다. 또 직종별로는 최고경영자가 30%를 넘었지만, 금융인들의 비중이 높아져 1979년 8%에서 2005년 14%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법조인(8%)보다 높다.

- 2012년 1월, 이코노미스트

2) 하버드 대학 체티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평가를 받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며, 불량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작다. 이 연구에 바탕을 두고 시카고,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이미 많은 지역에서 교사와 학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셸 리가 교육감으로 있는 워싱턴에서는 이번 여름에 나쁜 평가를 받은 교사 25명이 해고됐다.

- 2010년 8월, 뉴욕타임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납세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명백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도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1년 동안 250만명의 과세 자료가 활용되었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보다 미흡하다면 서러워(?)할 바로 미국에서

말이다. 체티 교수는 미 과세당국과의 계약 아래 조세정책 연구를 위한 패널 개발을 위해 자료은행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를 기초로 작년에 미국의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에 대한 매우 정교한 분석을 발표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년 소위 '점령'(Occupy) 시리즈를 통해 1대99 담론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상위소득 1%에 대한 자료 요청을 심심치 않게 받았지만 이에 부응할 수 없었다. 명색이 조세 전문연구기관이라는 생각에서 들어온 부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얼굴이 화끈거렸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한 번 체면 구기면 그만이겠지만, 정책의 효율성은 또 어떤가?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아닌가?

우리 국세기본법은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해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과세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 목적으로 통계청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었다. 그나마 이 정도의 문호가 열린 것도 오랜 기간에 걸친 문제 제기의 결과라고 한다. 과세자료를 이용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비밀 유지 장벽은 높지만 하다.

과세 자료가 없다고 정책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정책분석에 목표에 맞추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표본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 그 효용성이 과세자료에 크게 떨어진다. 필자가 속한 연구원도 7000가구의 패널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표본 수 부족을 실감할

때가 많다. 이런 정도의 표본 수를 유지하는데도 매년 십 수억원을 지출해야 하다 보니 표본 수를 마냥 늘릴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매우 유용하고 정확한 자료은행을 바로 곁에 두고서도 힘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을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말이다.

과세 자료의 보다 적극적인 공개는 과세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설적이지만, 카드 활성화 시책 등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세원 포착을 위해 과세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종래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난 10년간 신고인원 수가 3배로 늘었으며, 특히 기장신고자는 4배로 늘었다. 이제는 넓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오히려 면세나 감면의 영역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는 과세 당국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보다 투명한 분석을 통해 어느 계층에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분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 마련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증세를 논하기 이전에 그동안의 각종 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효과분석이 필요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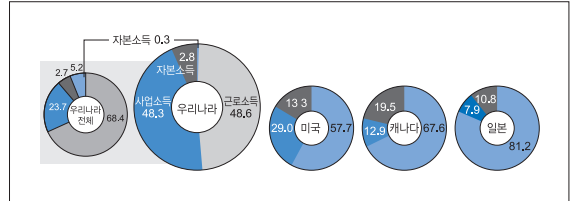
(서울신문 2012-4-18일자)

소득 상위 1%, 자영업자 비중 일본의 6배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군에는 다른 나라보다 변호사나 의사, 변리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유독 많다.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국 상위 1% 소득 유형별 구성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15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은 근로소득 48.6%, 사업소득 48.3%, 자본소득 2.8% 등으로 이뤄진다. 반면 미국은 상위 1%의 소득 구성이 근로소득 57.7%, 사업소득 29.0%, 자본소득 13.3%다. 일본은 근로소득이 81.2%, 사업소득 7.9%, 자본소득 10.8%다. 캐나다는 근로소득이 67.6%를 차지하고 사업소득 12.9%, 자본소득 19.5% 등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보다 고액연봉자는 많지만 고소득 자영 사업가는 적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가들에 대한 세원 확보가 미진해 세금 누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소득 비중이 높다. 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5000여 가구의 전체 소득은 근로소득 68.4%, 사업소득 23.7%, 자본소득 2.7%, 정부보조금 등 기타소득 5.2%로 이뤄져 있다. 사업소득은 상위 10%에서 29.8%로 높아지다 상위 1%에서는 48.3%로 대폭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상위 1%들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납세자와 근로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납세자들이 전체 납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에서 2009년 1.3%, 2010년 1.6% 등으로 커졌다. 이들이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8.1%에서 2010년 19.7%로 확대됐다. 소득금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체 소득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 크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 증가는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 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요인이 줄어 되레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감면 등 비과세를 줄여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12-4-16일자)

재정 위기 지자체, 지방소비세 늘려야 하나

지방소비세 확대 신중하게 검토해야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2010년 부가가치세 수입의 5%를 재원으로 해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더 확대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방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징수해 사용하는 지방세의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방소비세 확대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도입 확대를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소비세가 자주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주민들로부터 징수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하는데 지방소비세는 이름은 지방세지만 자주재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편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에 동일한 세목이 적용되는 세목으로서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며 행정도 국가에서 담당해 정책 결정과 세금의 징수에서 지방이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점검해 봐야 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지방의 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세수입이 증대된다면 증가한 세수입의 일부분을 세수입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가 고안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소비지출에 수도권·광역시·도도를 구분해 설정된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수치를 기준으로 지역별 배분비율을 정한다. 그런데 민간소비지출은 소비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므로 지역별 소비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지역의 소비 증가가 지방소비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강원도에서 소비한 금액은 서울의 민간소비지출에 포함될 뿐 강원도의 민간소비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 200%, 수도권 외의 도 300%)는 그나마 민간소비지출에 비례한 재원 배분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지방소비세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배분받으면 재정상태가 개선돼 국가가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 재원을 덜 받게 된다. 이런 효과들을 모두 종합해 궁극적으로 소비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와 지방 간 재정재원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능 이전에 따른 재원 이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지방소비세로 인해 국가와 지방 간 재정재원 배분 비율이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재원의 60% 이상을 이미 지방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 여건도 양호한 편이 아니다.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고령화·복지제도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등 최근의 경제 환경을 보면 앞으로 국가

재정 압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소비세를 확대해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일반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 지방교부세나 다른 이전 재원을 축소해 국가와 지방 간 재원배분 비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2012-4-7일자)

유류세 낮추면 에너지 소비 비만증 부추겨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고세율로 소비구조 개선율

고유가 속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류세 인하가 정작 에너지 소비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장기적으로 고세율·고가격 정책이 석유 소비 구조를 개선시켜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에너지 세계의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소비만 늘릴 수 있어 고유가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연구위원은 "고유가로 인한 고통은 '에너지 소비 비만증'이 원인"이라며 "선진국이 우리보다 고유가에 따른 고통을 훨씬 덜 느끼는 이유는 에너지 소비 구조가 슬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를 낮추면 당장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에너지 소비 비만증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고세율·고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치유책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2분기(4~6월)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휘발유 가격의 세금 비중이 9번째로 낮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총명목세율이 거의

일정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년 감세 효과가 발생했지만 상당수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수시로 유류세를 조정해 실효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유류세를 인상하더라도 소득분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해 따져봤더니 유류세는 약하지만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보유구조 및 운행 빈도, 거리가 세 부담 수준에 영향을 준다"며 "고소득층일수록 자동차를 더 많이 보유하고 운행해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12-4-5일자)

[시론] 복지재원 마련, 국민설득이 먼저다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는 역시 복지정책인 듯하다. 정당 스스로의 계산으로도 매년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복지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대책은 애매하다.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최대 수준이라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믿음직한 재원 대책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정도의 세수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소득세가 비록 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세목임은 분명하지만, 고소득자 해외 유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탈세도 부추길 수 있다. 작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에 의하면 2005년 12월 이후 착수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이 45.6%에 달하였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율이 인상되면, 탈세의 유인은 더 커질 수 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려는 사람들의 불만도 쌓일 수밖에 없다. 세법이 개정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를 ‘납세협력비용’이라고 부른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1000원을 납부하는 데 각각 75원과 55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 납세협력비용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증세가 이루어지면 납세자들은 추가적인 세금에 더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명시적인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그 이전에 이미 정해진 세금부터 제대로 걷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율을 양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도 더 줄여 주어야 한다. 정책효과를 다 거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세금 감면제도도 그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고소득계층에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소득공제는 당연히 고소득층에 보다 높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도 마치 징벌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얻어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속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상당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 단계로 증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세를 위해서도 단계가 있다. 국민에 대한 설득이 먼저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증세는 그 실행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실현된다고 해도 기대하는 세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조세연구원은 서울의 모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

험을 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 각기 다른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자신의 소득과 정해진 세율에 따라 결정된 세금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무작위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이 다를 경우, 납부세금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소득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실험을 종료하여 실험참가자들의 보수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세율결정방식이 탈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율이 투표로 결정된 경우 독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때보다 소득탈루율과 세금의 과소 납부 비율이 각각 7.5%포인트, 1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납세자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더니 탈세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에 던지는 시사점은 크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리고 증세를 택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서울신문 2012-3-27일자〉

‘대학까지 무상교육’ 찬성보다 반대 많아... 2년 새 역전

지난해 10월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이후 정치권엔 ‘보편적 복지’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닳았다. 국민의식은 가난한 사람 위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보다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 복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일 발표된 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의 ‘사회정책 요구 및 인식조사’는 이런 해석에 제동을 건다.

오호려 현 정부 출범 이후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동의한다’가 4.5%(2008) → 8.2%(2010) →

12.7%(2012)로, ‘동의한다’는 28.3% → 31.3% → 33.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반 비율은 32.8% 대 38.3%로 반대가 더 높았지만, 올해엔 45.9% 대 28.4%로 찬성이 훨씬 우세했다. 정치권, 특히 야권의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다.

국민들의 복지 성향은 사안마다 엇갈렸다. ‘건강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거세다. 2010년 찬성과 반대 비율이 21.3% 대 48.2%였는데, 올해엔 15.7% 대 53.6%로 반대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의료서비스만큼은 시장원리의 도입보다 공공성 강화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는 의미다.

반면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경우 2010년 찬성 37.8%, 반대 26.7%로 찬성이 우세했지만, 이번엔 찬성 28.0%, 반대 42.9%로 찬반 비율이 2년 만에 역전됐다. 대학교육까지 공짜로 하는 것보다 그 재원으로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이다.

공약을 정치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중도파 공약이었다. 응답자들에게 좌파 공약(우리나라는 잘사는 사람만 인간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빈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펼치겠다), 중도파 공약(경제 살리기에 힘쓰는 동시에 국민 전체가 복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우파 공약(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시키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에 힘쓰겠다)을 각각 제시하고 어느 것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54.8%가 중도파 공약을 골랐다. 좌파 공약은 21.7%, 우파 공약은 16.6%의 지지율을 얻었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20일 “국민들이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을 통해 복지와 세금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하면서 복지 이슈에 보다 신중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세계적으로 바닥권이란 점이다.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소득 10분위(1:최상층~10:최하층)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 평

균이 6.38로 나타났다. 숫자가 10에 가까울수록 자신은 하층에 속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의미다. 이는 2009년 같은 설문으로 조사한 세계 16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4.65)·대만(4.26)은 우리에게 비해 훨씬 양호했으며, 프랑스 4.89, 미국 5.20, 영국 5.24, 독일 5.70, 노르웨이 6.10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에 대한 동의율 92.5%도 포르투갈(9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소득재분배에 대한 불만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의 확대 추세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안상훈(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 통합을 위해 보편복지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질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우선적으로 추구할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2-3-21일자)

재정포럼

2012년 4월호 통권 제19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산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2년 4월 16일 발행 / 제16권 제4호(통권 제19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02)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2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